

博士學位論文

地方自治團體 財務報告制度에 관한
實證的 研究

12.296



제 濟州大學校 大學院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經營學科

姜 萬 淳

1999年 12月

地方自治團體 財務報告制度에 관한 實證的 研究

指導教授 高 富 彦

姜 萬 淳

이 論文을 經營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9年 12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姜萬淳의 經營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大學院

1999年 12月

A Study on the Municipal Financial Reporting System

Man-Soon Kang

(Supervised by professor Boo-Eon Ko)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UTY

1999. 12. .

목 차

제 1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5
제 3 절 논문의 구성	6
제 2 장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에 관한 고찰	8
제 1 절 정부회계의 특징	8
1. 정부회계의 환경과 정의	8
2. 정부의 보고책임과 재무보고 목적	10
3. 정부회계의 특징	11
제 2 절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14
1.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내용과 관련 법률	14
2. 예산회계제도	17
3.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일반원칙	27
4. 재무보고제도	30
5. 영리기업 및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차이	31
6. 우리 나라 현행 지방자치단체회계의 문제점	32
제 3 절 미국의 지방정부회계제도	35
1. 회계의 목적	35
2.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37
3. 펀드회계와 예산회계	45
4. 재무보고제도	47
제 4 절 우리 나라와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비교	51
1. 회계기준	51
2. 회계내용	52
3. 회계정보공시	55
제 5 절 선행연구	58
제 3장 연구방법 및 가설설정	66
제 1 절 연구모형과 변수정의	66
1. 연구모형	66
2. 변수의 정의	67

제 2 절 가설의 설정 및 조사방법	74
1. 가설의 설정	74
2. 조사방법	75
제 4 장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	77
제1절 예비분석	77
1. 재무보고서에 대한 인식도	77
2. 재무보고서의 이용도	78
3. 재무보고서에 대한 만족도	81
4. 정보의 유형에 대한 인식	83
제2절 가설검증 및 해석	85
1. 재무보고서 형식별 정보제공 목적에 대한 인지도	85
2.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92
제 5 장 결 론	100
제 1 절 요약 및 결론	100
제 2 절 연구의 한계와 미래의 연구방향	103
참고문헌	105
부록 A (설문지)	109
부록 B (통계처리표)	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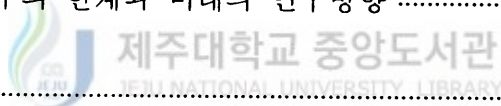


표 목 차

표 2-1. 영리기업 및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차이점 비교	32
표 2-2. 우리나라 현행 정부회계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문제점	34
표 2-3. 포괄적 연차재무보고서 내용	49
표 2-4. 우리 나라와 미국의 회계제도 비교	56
표 2-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련 선행연구	64
표 3-1. 계속비와 명시이월의 차이	71
표 3-2. 설문항목 및 구성 내용	74
표 3-3. 설문지 배포 및 회수현황	76
표 4-1. 재무보고서에 대한 집단별 인지도	77
표 4-2. 재무보고서에 대한 이용자별 인지도	78
표 4-3. 재무보고서의 이용빈도	78
표 4-4. 재무보고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79
표 4-5. 재무보고서의 일반적 유용성	80
표 4-6. 재무정보 원천	81
표 4-7. 재무정보의 만족도	82
표 4-8. 재무정보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82
표 4-9. 정보 유형별 선호도	84
표 4-10. 정보 유형별 평균 분석	85
표 4-11. 정보유형별 인식정도에 대한 재무보고서간의 차이 비교	86
표 4-12. 정보유형별 인식정도에 대한 보고서간의 차이 비교(경험자 집단)	86
표 4-13. 정보유형별 인식정도에 대한 보고서간의 차이 비교(시민집단)	88
표 4-14. 정보유형별 인식정도에 대한 보고서간의 차이 비교(시민집단-경험자집단)	88

표 4-15. 정보유형별 인식정도에 대한 보고서간의 차이 비교(채권자/투자자)	89
표 4-16. 정보유형별 인식정도에 대한 보고서간의 차이 비교(채권자/투자자-경험자집단)	90
표 4-17. 정보유형별 인식정도에 대한 보고서간의 차이 비교(입법/행정기관)	91
표 4-18. 정보유형별 인식정도에 대한 보고서간의 차이 비교(입법/행정기관-경험자집단)	91
표 4-19.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92
표 4-20.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기존보고서)93	
표 4-21.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수정보고서)93	
표 4-22.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시민집단)...	94
표 4-23.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채권자/투자자)	95
표 4-24.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입법/행정기관)	96
표 4-25. 기존 재무보고서의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시민집단)	96
표 4-26. 수정 재무보고서의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시민집단)	97
표 4-27. 기존 재무보고서의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채권자/투자자)	97
표 4-28. 수정 재무보고서의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채권자/투자자)	98
표 4-29. 기존 재무보고서의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입법/행정기관)	98
표 4-30. 수정 재무보고서의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입법/행정기관)	99

그림 목 차

그림 2-1. 예산안처리 흐름도	21
그림 2-2. 세출예산 집행 흐름도	22
그림 2-3. 결산서 작성	23
그림 2-4. 결산승인 신청(시·도)	24
그림 2-5. 결산승인 신청(시·군·구).....	25
그림 2-6. 결산검사 및 승인	26
그림 2-7. 주 및 지방정부 회계실체	39
그림 2-8. 재무보고 피라미드	48
그림 3-1. 연구모형	6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BSTRACT

A Study on the Municipal Financial Reporting System

Man-Soon Kang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It was necessary for municipalities to run local administration and finance on the basis of managerial mind, because of the execution of local autonomy in 1999 and IMF. To support these managerial mind, it is required that we should do accounting management productively. But when we see municipalities in the aspect of accounting, it has not been recognized in independent accounting entity but in a part of administ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evaluate present municipal accounting system, and have a good grasp of information needs of interest groups related to municipality, so come up with the direction of useful financial report to adapt to the change of new accounting environment.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 used literature and positive research at the same time. In literature research, I reviewed and analyzed precedent research through comparison of present municipal accounting system in Korea with that of America. In positive research, I placed the focus on the ability that could provide information and the usefulness of financial report between the existing financial report and modified financial report. using information user group, type of information, and financial report format.

Type of information was classified into fiscal compliance, financial viability, management performance, and cost of service. And financial report was a real report of a certain base-municipality in Che-ju Do, and I used modified financial report drawn up using the existing

financial report. Information user group was classified into citizen group, creditor/investor group, legislative/ administrative group.

SPSSWIN(Ver.7.5) was used as analysis, chi-square analysis and analysis of variance was used as preliminary analysis. And I used T-test analysis and Single Regression Analysis to virify hypothesis.

Result of Preliminary Analysis run as follows.

(1) There is very low frequence in use of the existing financial report. That reason is that people is not interested in financial information of municipality or they do not have the need of it. But 85.4% of respondents answered positively to the usefulness of financial report.

(2) Most respondents answered negatively to the satisfaction of the existing financial report except legislative/administrative group. That reason was that terms used in it was difficult and the report was not concrete.

Result of study to verify four research hypotheses run as follows.

(1)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of recognition extent to the purpose of financial report providing information according to report formats, all of information user groups answered that it was more useful to use modified financial report than the existing financial report in information related to financial viability, management performance, the cost of service, but it was the opposite in fiscal compliance information related to budget and legal force.

To meet information user group's need of information, financial statements suitable accounting system of municipality should be devised and using this, financial report should be done. And to guarantee residents' right to know and make firm accountability and stewardship, it is necessary to embody financial report and the method of disclos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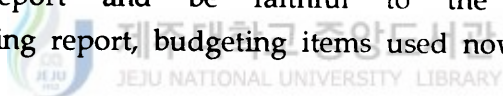
(2) The result of analyzing how information type influences the usefulness of financial report (hypothesis 3,4) was that fiscal compliance, financial viability, and information related to management performance influence the usefulness of financial report. That is, information only

related to fiscal compliance do it in the existing financial report, and management performance, financial viability, and information related to the cost of service do it in modified financial report.

Because this study has been done on the basis of the format of financial report, questions will be raised in generalizing the result of this study on account of a matter of form.

Other limitations of this study run as follows.

- (1) In this study, there are matters that do not overcome regional limit because of external propriety of research subject and users of financial report of municipality are restricted.
- (2) This study focuses on the usefulness of financial report, and only general accounting except public enterprise special accounting belongs to the scope of this study to simplify a format of report.
- (3) In the process of making modified financial report to simplify a format of report and be faithful to the content of present budgeting-closing report, budgeting items used now are included.



제 1장 서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기관으로 민간경제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영상 필요한 재원을 세입으로 조달하고 이를 필요한 경비에 지출함으로써 목적인 서비스나 재원을 산출하여 이를 수혜자인 주민에게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제적·정치적 조직체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기능을 얼마나 유효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는가에 관한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올바르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 회계정보시스템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의회기능을 통하여 행정과 재정운용 계획을 보고하고 미래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주민들에게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행정관리자들이 주민과 지역을 위해 얼마나 능률적이고 유효하게 자치업무를 수행하였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행정관리자들에게도 경영관리적 사고에 입각한 행·재정 운용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재정은 예산규모로 보아 1999년도 지방예산총액이 50조 654억원으로 국가 전체 예산의 30%를 점유하고 있으며, 재정의 기능으로 보아도 자원 배분기능·소득재분배기능·경제의 안정화기능 중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서비스의 공급 등 재정활동을 통하여 자원배분기능을 실현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¹⁾

미국의 정부회계기준위원회(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 Board, GA

1) 서효원, "정부회계의 복식회계제도 도입방안2", 월간 공인회계사 3월호, 1999. p.19.

SB)가 개념보고서 제1호에서 공표한 주 및 지방정부의 재무보고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

(1) 재무보고는 정부가 공공회계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재무보고 이용자들이 정부의 보고책임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무보고는 재무정보 이용자들이 정부실체의 당해년도 운영결과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3) 재무보고는 정부실체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수준과 만기가 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재무보고는 재무정보 이용자들의 필요 또는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것이므로, 정보이용자들의 정보욕구 내용이 변화함에 따라 재무보고의 목적도 변화하게 된다. 즉, 재무보고의 목적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회계시스템은 전통적인 협의의 수탁관리책임(stewardship responsibility)만을 강조하여 주로 법조문적·행정적 방법에 의해 운용되고³⁾ 있어 경직되고 창의성이 결여되어 변화하는 회계환경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1년 지방자치의 실시와 최근 불어닥친 IMF 한파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영마인드에 입각하여 지방 행·재정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경영마인드란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이윤과 공익을 추구하면서 일반 영리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겠다는 사고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행정의 사고방식을 기업 경영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독립채산이라는 대 전제하에서 생성되고

2) GASB, *Concepts Statements No.1 : Object of Financial Reporting, in GASB Codification*, Appendix B, par.56, GASB. 1987.

3) 이운재,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회계학연구 제9호, 1989. p 138.

있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영마인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회계관리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⁴⁾ 그러나 회계학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독립된 제도로서 발전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하부기관으로서 중앙정부의 회계제도와 각종 법률에 의해 지출통제와 예산준수 여부의 확인을 위주로 운용되어 왔고, 따라서 행정기관의 회계는 독립된 회계실체로 인식되지 못하고 단지 행정의 일부로만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회계는 발전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전면적 실시로 주민욕구가 증대되고, 경제규모가 대형화되는 등의 환경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다양화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정보 욕구도 다양화됨으로서 행정관리자들에게는 새로운 책임과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환경의 변화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⁵⁾

첫째,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적인 사업추진과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다양화로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시에 따르는 재정운용 자세에서 독자적 종합경영의 주체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경영에의 주민 참여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회계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원활화와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정운용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예산집행담당자에 대한 보고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각종 재정정보의 산출이 요구된다.

셋째, 기업의 회계정보시스템은 ① 복식부기 원리의 적용 ② 대차대조표의 작성 ③ 손익계산서의 작성 ④ 각종 경영분석의 종합적 체계로 이루어진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회계정보시스템은 정형적인 시스템으로 확립되지

4) 조태형, "복식부기 회계관리는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가?", 월간 공인회계사 1월호, 1999. p. 61.

5) 서정형,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정보시스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학원, 1991. p.2.

못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현행의 경직된 예산위주의 법조문식 정부회계를 지양하고, 효율적인 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정정보의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드레빈」(A.Drebin), 「첸」(J.Chan), 「퍼그슨」(L.Ferguson) 등은 정부회계의 재무보고는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의사결정과 보고책임(accountability) 및 수탁관리책임(stewardship responsibility)을 증명하고, 제한된 비용과 자료의 이용범위 내에서 관리 및 조직의 업적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⁶⁾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지출의 통제 및 예산과 법규준수 여부, 행정관리자에 대한 보고책임과 역할 기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운영결과 및 업적평가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여 이들이 의사결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를 분석·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련 이해관계자의 정보욕구를 규명하여 새로운 회계환경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유용한 재무보고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법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재무보고제도의 문제점을 평가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 형식에 따른 정보제공목적(정보유형)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와 그 정보유형에 따른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 재무보고서 형식에 따라 정보유형(이용자의 정보욕구)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가?

6) 박옥순,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정보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 대학원, 1992. p 4.

(나) 재무보고서 형식에 따라 정보이용자 집단별 정보유형에 대한 인식에
는 차이가 있는가?

(다) 정보유형에 따라 재무보고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라) 정보이용자 집단별로 정보유형에 따라 재무보고 유용성에 영향을 미
치는가?

셋째, 부가적으로 정보이용자의 집단별 정보욕구를 평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첫째, 현행 예산회계를 중심으로 한 단식부기시스템으로는 공공의 보고
책임을 다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회계환경에 적합한 복식부기시스템을
갖춘 정부회계기준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제도는 정보이용자의 정보욕구를 반영하는
공시제도가 확립되어야 하고, 일반목적에 위한 재무보고 형식의 개선 및
새로운 회계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재무보고의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 2 절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함께 실증연구를 병행하
였다. 문헌연구는 주로 한국과 미국에서 간행된 각종 전문서적, 연구논문
및 조사보고서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
무보고서에 대한 인식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법을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는 가설검
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주로 chi-square분석, 분
산분석, T-test분석,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이
용자그룹인 ① 시민집단 ② 투자자와 채권자 ③ 입법/행정기관 등 3개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정보욕구는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와 「앤서니」(R. Anthony)가 제안한 4가지 정보욕구 즉 ① 이행(fiscal compliance) ② 재무능력(financial viability) ③ 성과평가(management performance) ④ 서비스원가(cost of service)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근거로 대차대조표와 수지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이용자 집단별로, (1) 기존 재무정보에 대한 이용도 및 만족도, (2) 재무보고서 형식별 정보제공목적에 대한 인지도 (3)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그 목적과 기능이 유사하나 다만 그 활동의 다양성과 범위가 다를 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회계모델은 거의 같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논리 전개와 편의를 위해 그 조직과 기능이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회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행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정부고유의 행정기능에 관한 일반회계와 특정사업의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회계와 같은 공기업형 회계와 특정자금 등에 의한 필요에 따른 기금형 회계로 구분 운용되고 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회계는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논의코자 한다. 또한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하여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제주도내 특정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기존의 재무보고서인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대차대조표와 수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준비하였다.

제 3 절 논문의 구성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지방정부회계제도가 발전된 미국의

7) 이윤재, op. cit., 1989. p.139.

지방정부회계제도를 비교 고찰함과 동시에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고찰하였다. 제1절은 정부회계의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본 연구과제의 중요성을 제시하였고,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회계제도의 내용을 검토하고,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회계상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제3절과 4절은 미국의 지방정부 회계제도에 대한 고찰과 함께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방정부회계제도를 비교 고찰하였다. 제5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련 선행연구결과를 요약하여 그 논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제3장은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가설검증을 위한 연구방법을 설명하였다. 제1절은 설정한 연구모형과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각 변수들에 대한 것으로, 정보이용자집단은 시민집단, 투자자/채권자집단, 입법/행정기관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앤서니」(R.Anthony)와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가 제안한 것을 이용하여 재무보고 이용자들은 이행(fiscal compliance), 능력(financial viability), 성과(management performance), 원가(cost of service)라는 4가지 유형의 정보욕구를 갖는다고 보았다. 또한 재무보고서 형식은 기존의 재무보고서인 예·결산보고서와 이를 토대로 하여 수정한 대차대조표와 운영수지보고서를 작성 준비하였다. 제2절은 연구모형을 기초로 하여 설정한 가설 즉, 재무보고서형식별 정보제공 목적에 대한 인지도에는 차이가 있는지(가설 1, 2)와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가설 3, 4)에 대한 것과 가설 검증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제4장은 연구가설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와 이에 대한 해석으로, 제1절에서는 재무보고서에 대한 인식도, 이용도, 만족도 등 예비분석을 하였으며, 제2절은 제3장에서 제시한 각 가설의 검증결과와 해석을 하였다.

제5장의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제 2 장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에 관한 고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회계모델은 거의 동일하므로 본 장에서는 먼저 정부회계의 특징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를 비교·분석한 후 선행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 1 절 정부회계의 특징

1. 정부회계의 환경과 정의

민주국가에서 정부조직의 주요 환경적 특징은 대의정부형태와 권력의 분립이다. 대의정부는 권력은 최종적으로 시민에게 있고 선거를 통하여 그 권력을 선출된 관리에게 위임한다. 위임된 권력은 권력분립제도에 의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권력분립제도는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어 행정부는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 행정부는 승인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부는 의회에 대하여 보고책임을 지며, 의회와 행정부는 다 같이 주민에 대하여 보고책임을 진다. 또한 상위정부(중앙정부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상위정부에 대해서도 보고책임을 지게 된다.

이와 같은 정부조직의 특징으로 행정관리자는 유권자, 납세자, 의회, 상위정부 등에 공공회계책임을 지며, 정부회계는 정부가 그 공공회계책임을 완수하도록 도와주고 재무보고 이용자들이 정부의 공공회계책임의 수행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차적 중요성을 갖는다.⁸⁾

또한 정부조직의 중요한 특징은 비영리성과 공공성이다. 이러한 특징을

8) 이윤재, 현대정부 및 비영리회계, 박영사,1993, pp.1-2.

찾는 정부조직은 영리기업과 차이가 있다. 정부조직은 의도적 이윤동기를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조직이 아니며, 자원제공자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직접적 또는 비례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지분이 없기 때문에 지분의 매각, 교환, 청산시 잔여지분 배분이 없이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업조직과는 다르다.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의 전통적 회계의 정의는 「회계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재무적인 성격을 가진 거래와 사건을 중요한 방법과 화폐단위로 기록, 분류, 요약하는 기술이며, 또한 그 결과를 해석하는 기술이다.」⁹⁾ 즉, 회계는 조직의 상태와 활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직의 경제적 사건을 분석, 기록, 요약, 평가, 해석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회계는 정부조직의 경제적 사건을 분석, 기록, 요약, 평가, 해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기술이다.¹⁰⁾ 그리고 정보지향적인 현대적 정의는 1966년 미국회계학회(AAA)에서 발표한 기초적 회계이론에 관한 보고서(ASOBAT)에서 처음 정의되었고, 1970년 미국공인회계사에서 발표한 회계원칙심의회 보고서(APB No.4)에서도 비슷한 정의를 하고 있다. 미국회계학회의 ASOBAT는 “회계란 정보이용자가 적절한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¹¹⁾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대적 의미의 정부회계도 정부조직과 이해관계를 가진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부실체의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를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회계는 기업회계와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나지만, 기본적으로 회계시스템을 통해 경제활동을 측정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메카니즘은 유사한 것이다.

9) Committee on Terminology, "Review and Resume", ATB No.1, N.Y.: AICPA, 1941, p.9.

10) 윤성식, 권수영, 「정부회계」, 법문사, 1999. p.64.

11) Committee to Prepare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Evanston,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1966, p.1.

2. 정부의 보고책임과 재무보고 목적

자신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조직의 책임자는 그들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으며 그러한 보고책임의 의무는 법규, 계약, 조직정책, 또는 도덕적 의무 등 매우 광범위한 의무에서 비롯된다. 비영리조직의 경우에도 관리자는 실정법상, 계약상 그리고 기타 규제의 준수에 관한 보고책임도 져야 하며, 특히 공적 조직들은 사회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의 보고책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 있다. 미국감사원은 조직의 경영자 또는 공무원이 이행해야 할 보고책임의 내용과 이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정부감사기준을 마련하고 광범위한 보고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¹²⁾

정부회계의 목적은 부정과 오류의 방지 및 적발, 유효성과 효율성의 평가를 통한 목적달성과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 그리고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능케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결국 통제를 위한 것인데 국민이 정부를 통제하는 것과 조직의 내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통제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정부회계가 궁극적으로 재무보고를 통하여 국민 또는 지역 주민들에게 재정상태와 정부활동의 결과를 보고하면 정부가 어떤 일을 누구를 위하여 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회계가 통제를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정부회계기준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정부회계기준 원칙 9(Principle 9 of the GAAP)에서는 매년 예산이 채택되어야 하고 회계정보시스템이 예산통제의 기초가 되어야 하며 재무보고서에는 예산과 실제의 비교내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³⁾

12) 이우택, “사회의 투명성과 회계의 발전을 위한 연구: 회계의 Accountability 기능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 8권 제1호, 한국회계학회, 1999, pp.120-121.

13) C.W. Garner, *Accounting and Budgeting in Public and Nonprofit Organizations*, Jossey-Bass. 1991. pp.48-49.

1987년 미국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의 개념보고서 제1호 "재무보고 목적"은 보고책임(accountability)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고책임은 지방정부의 자원조달과 그 사용목적에 시민에게 정당화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의 보고책임은 시민이 알 권리(right to know)를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한 알 권리는 시민과 그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에 의해 공공의 논의를 유도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공표된 사실을 제공받을 권리를 말한다. 재무보고는 민주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보고책임이 있는 정부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주된 역할을 한다.¹⁴⁾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에 의한 지방정부의 재무보고목적은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용된다.¹⁵⁾

- 가) 법적으로 승인된 예산과 실제 재무결과의 비교
- 나) 재무상태와 활동결과의 평가
- 다) 재무 관계 법령, 규칙, 및 규제 이행여부의 결정
- 라) 유효성 및 효율성 평가

3. 정부회계의 특징

정부조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업조직과 유사하다.

- 가) 조직목적을 위해 유사한 자원을 사용한다.
- 나) 회계시스템을 통하여 산출되는 정보를 필요로 한다.
- 다) 조달한 자원을 유효성과 효율성이 있게 활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 라) 희소자원을 획득하여 의도하는 바의 재화나 서비스로 전환한다.

그러나 정부조직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기업조직과 차이가 있다.

- (1) 조직목적 및 성과개념의 차이

14) GASB, op. cit., par.56, 1987.

15) John H. Engstrom, Leon E. Hay, *Essentials of Accounting for Governmental and Not-for-Profit Organizations*, Fifth Edition, Irwin/McGraw-Hill, 1999, p.5

정부회계의 가장 큰 특징은 비영리조직으로 기업조직처럼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비영리 공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므로 화폐측정에 의한 뚜렷한 하나의 이익이라는 성과에 대한 목표가 존재하나, 정부의 성과개념은 기업조직과 같이 단일의 이익척도가 아닌 화폐 및 비화폐적 척도에 의한 하나 이상의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이들이 서로 상충되기도 한다. 1994년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의 개념보고서 제2호 “서비스 투입노력 및 성과 보고서(Service Efforts and Accomplishments Reporting)”에서는 정부실체의 성과에 대해 전통적 재무제표에 제시될 수 있는 것보다 더 완전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 투입노력에 대한 지표는 화폐뿐만 아니라 비화폐적 자원의 투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비스 성과에 대한 지표도 산출물 및 성과 모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¹⁶⁾

(2) 성과측정의 어려움

기업은 이익을 단일 화폐에 의해 측정하여 목표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으나,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목표달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적절한 측정치가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결과(outcome or result)를 측정해야 하나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대신 산출을 측정하기도 한다. 정부의 산출도 기업의 이익과는 달리 측정하기가 어렵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측정이 불가능하기도 한다.

(3) 소유권 개념의 차이

기업은 소유권을 가진 자본가에 의해 설립된 경제주체로 소유권은 기업회계에 의해 자본 계정에 반영되며, 자신의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고 타인의 소유 지분을 구입하여 자신의 지분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이 주인이라 해도 국민은 정부를 사고 팔 수가 없다. 따라서 정부회계에서는 자본이라는 용어 대신 펀드잔액(Fund Balance)이라는 용어를

16) John H. Engstrom, Leon E. Hay, op. cit., pp. 5-6.

사용한다.

(4) 재무제표 정보의 한계

기업의 목표 달성도는 손익계산서에 의해 측정 가능하지만 정부의 목표 달성도는 재무제표상의 회계정보에 의해 판단하기가 어렵다. 기업의 재무제표인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해당하는 수입지출보고서와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재무제표와는 달리 정부조직의 재무상태와 활동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불충분하다.

(5) 예산과의 연계가 기업의 경우보다 더 요구된다.

기업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변동예산 같은 신축성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은 매우 엄격하며 예산의 집행 또한 신축성보다는 액수의 크기나 사용처에 통제를 가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회계는 기업의 경우보다 예산과의 연계가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6) 법규에 의한 집행 및 제약

정부 예산은 엄격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반드시 법규의 형태로 통과시킨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예산은 예산회계법에 의해 운영되므로 신축성의 부여는 아주 작은 범위에 그친다.

(7) 현금주의와 수정된 발생주의회계의 사용

우리 나라의 경우 예산회계법에서 발생주의를 사용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현금주의회계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발생주의는 수익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측정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데, 정부회계에서 적용하는데는 어려운 점도 있다.

(8) 단식부기의 사용

정부회계에서 대부분 발생주의회계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다. 복식부기의 경우 여러 가지 면에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① 정확성 유지 및 자기 검증기능 ② 보다 많은 정보 제공 가능 ③ 경제적 사건을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 ④

보다 정확한 수익과 비용 측정이 가능한 것 등이다.

(9) 펀드 회계의 채택

정부회계와 기업회계의 가장 뚜렷한 차이 중의 하나는 펀드회계의 채택이다. 펀드회계는 재원 제공자가 원하는 방식에 의해 원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자산별로 펀드를 단위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펀드는 회계의 주체로 수탁책임(Stewardship)을 강조하는 공공부문의 회계를 위해 고안된 운영과 보고의 주체이다.

제 2 절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1.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내용과 관련 법률

(1) 회계의 내용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크게 예산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된다. 예산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입 및 세출을 관리하는 회계이고, 기금회계는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된 기금을 운영·관리하기 위한 회계이다. 예산회계는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진다. 일반회계는 일반행정, 지역사회개발, 지역경제개발 등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활동에 관한 세입·세출을 관리하기 위한 회계이고,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 활동 중 특정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 즉, 상·하수도, 의료원, 지하철 등과 관계된 세입·세출을 관리하는 회계이다. 특별회계는 다시 지방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나눌 수 있다.¹⁷⁾

(2)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법규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회계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규나 규칙에 따라 처리된다. 이들 법규와 규칙에는 「지방자치법」과

17) 권찬태, 안홍복,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회계의 구조적 특징과 개선방안", 경상논집 (경북대 경제경영연구소), 제22권 제2,3호, 1994. pp. 2-3.

동 시행령을 모범으로 하여, 별도의 법으로 「지방재정법」과 동시행령이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조례」가 있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지방공기업법」과 동 시행령이 있다.

가. 지방자치법

정부 수립 후 1949년 7월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을 제정 공포하여 지방자치제를 도입하였으며, 1952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나, 1961년 5월 지방자치 자체가 중단되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공포로 지방자치법은 사실상 사문화 되었다.¹⁸⁾

현재의 지방자치법은 1988년 4월 법률 제4004호로 제정되어 10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 중 회계와 관련되는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7장의 「재무」에 관한 규정으로, 제7장의 구성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절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 건전재정의 운영, 국가시책의 구현,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제2절 예산 및 결산 : 회계의 구분, 예산의 편성과 의결, 계속비, 예비비, 추가경정예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예산의 이송·고시 등 및 결산

제3절 수입 및 지출 :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 신청, 경비의 지출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 재산 및 기금의 설치,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공공시설 등

18) 조창현,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동아일보사, 1988. p.51.

제5절 보칙 :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지방공기업이 아닌 지방공사 및 공단의 설립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장 「재무」에는 법 제115조 ①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계획과 법 제125조 ③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선임과 결산검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규정에 의해 제정된 법률이다. 1963년 11월 11일 법률 제1443호로 제정되었으며, 현재의 지방재정법은 1988년 4월 6일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된 후 7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및 국가재정과 지방재정과의 관계 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은 12장 119조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장 총칙	제 2장 경비의 부담	제 3장 예산
제 4장 결산	제 5장 수입	제 6장 지출
제 7장 계약	제 8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 9장 시효
제10장 재산	제11장 회계관계공무원	제12장 보칙

또한 지방재정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한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지방재정법시행규칙인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은 예·결산상의 관·항·목의 구분, 실무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작성양식 등에 관한 형식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회계 전반을 규율하는 회계원칙이자 지도원리라 할 수 있다.

다. 지방공기업법

1969년 1월 29일 지방공기업법은 법률 제2101호로 제정되어 1980년 1월

4일 개정되었으며, 그 후 5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 내용은 지방공기업의 조직과 재무 및 직원의 신분, 기타 기업경영의 기준 등이다. 지방공기업의 회계는 본 법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지방공기업법 제2조, 동 시행령 제2조)

① 상수도사업 ② 공업용수도사업 ③ 궤도사업 ④ 자동차운송사업 ⑤ 가스사업 ⑥ 지방도로사업 ⑦ 하수도사업 ⑧ 청소위생사업 ⑨ 주택사업 ⑩ 의료사업 ⑪ 매장 및 묘지사업

2. 예산회계제도

(1) 예산회계의 의의와 성격

예산회계는 특정조직이 일정기간동안 일정목적을 위해 경제적 자원을 소비하기 위한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추정치이다. 정부조직과 같은 비영리조직은 제공한 서비스를 측정하기가 곤란하다. 즉 성과나 이익을 단일척도로 표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조직의 자원조달과 운영성과의 상관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목적내의 소비지출에 대한 통제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업적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통하여 목표 달성에 따른 자원배분을 구체화시키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산회계의 성격은 법적 구속력이 강하고, 고정된 1년 단기예산 중심이며, 자금조달과 직접 관련성이 크다. 정부예산은 단순한 견적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관한 구체적 최종적 단계의 행위계획이다. 또한 예산회계는 초과지출 방지 및 목적외 사용 금지 등 통제수단으로

실적평가를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2) 예산회계의 순환과정

예산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유입액을 세입이라 하고, 자금 유출액을 세출이라 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이를 심의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결산하여 검사를 받고, 이를 보고하는 과정으로 자금의 흐름(flow)에 관한 회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stock)이나 부채에 대한 정보는 부분적으로만 기록·관리되고 있을 뿐이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중심으로 예산회계의 순환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예산의 편성

예산편성은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행정자치부장관이 7월 31일까지 시달하면서부터 이 지침에 따라 그리고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지방예산의 내용은 ① 예산총칙 ② 세입·세출예산 ③ 계속비 ④ 채무부담행위 ⑤ 명시이월비로 구성된다. (지방재정법 제31조)

예산안 처리의 흐름도는 <그림 2-1>과 같다.

한편, 공기업의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성되는데, 사업예산은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것이고, 자본예산은 자산·부채·자본의 증감에 관한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것이다.

나. 예산의 심의와 의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군·구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시·군·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118조 1,2,3항)

다. 예산의 집행

세입예산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징수관에 의해 결정되고, 징수관의 징수결정은 법령·조례·기타 규칙 등에 의하여 조사·결정되며, 납세의무자에게 납입을 고지한다. 수납은 금고를 설치하여 수납한다.

세출예산의 집행 흐름도는 <그림 2-2>와 같다.

라. 결산 및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이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감시를 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① 세입·세출예산, 채권·채무 등을 1년간 집행한 실적을 예산과목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정리한 기록의 표시 ②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에게 1년간의 활동실적을 계수로 나타낸 것 ③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이며 결산으로 나타난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Feedback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④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그 집행책임을 정치적으로 해제받는 의미를 지닌 것이라 할 수 있다.

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를 포함하는데, 세입내용에는 ㉠ 세입예산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을, 세출내용에는 ㉥ 세출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비비사용액 ㉨ 전용 등 증감액 ㉩ 초과수입에 따른 초과지불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불용액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41조)

결산흐름도는 <그림 2-3>¹⁹⁾, <그림 2-4>, <그림 2-5>, <그림 2-6>과 같다.

마. 결산검사 및 승인

결산검사는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내용을 검사하는 것이며,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19) 제주도, 「회계실무」, 제주도, 1999. pp.208-211.

이 감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결산서를 지방의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① 감사위원의 선임

- 위원 수 : 시·도 - 5~10인 이내

시·군·구 - 3~5인 이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1항)

- 자격 : 지방의회의원,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 선임.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감사위원

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2항)

② 결산검사사항(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1항)

- 세입·세출 결산

-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재산 및 기금의 결산

- 금고의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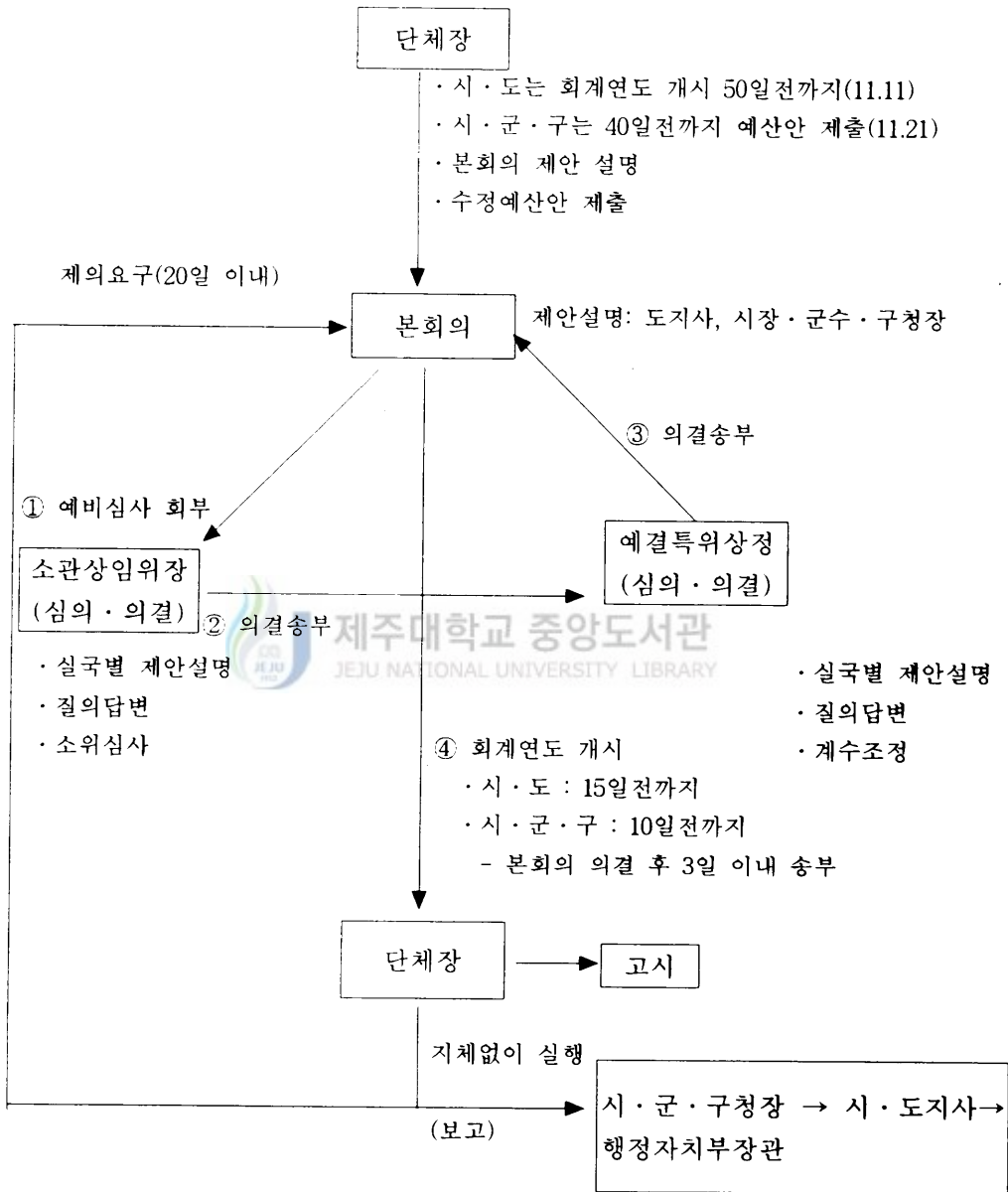
③ 결산검사 의견서 제출(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3항)

- 결산검사위원은 검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감사의견서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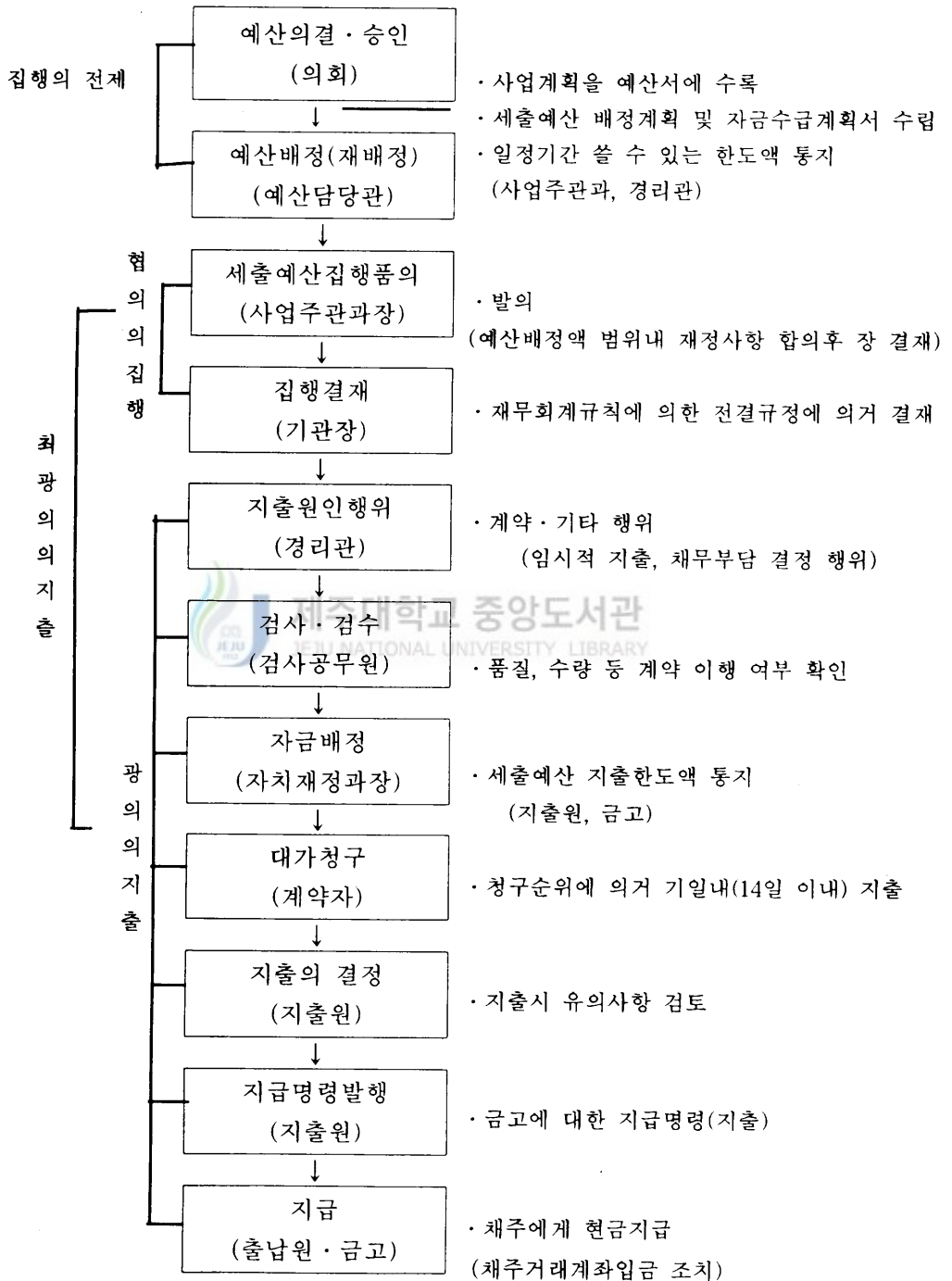
- 위원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

그림 2-1. 예산안처리 흐름도²⁰⁾



20) 제주도, op. cit., p. 57.

그림 2-2. 세출예산집행 흐름도²¹⁾



21) 제주도, op. cit., p.73.

그림 2-3. 결산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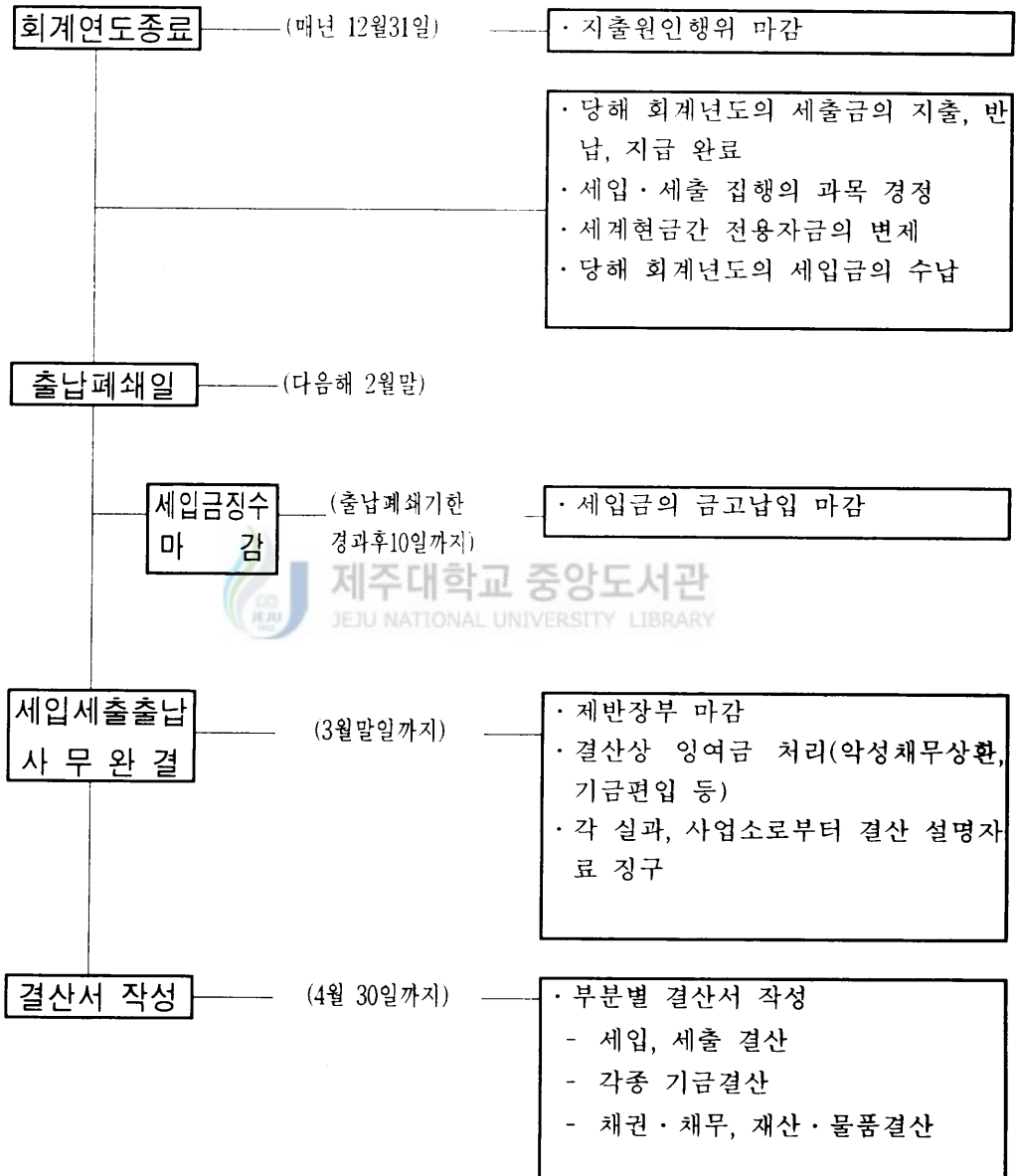


그림 2-4. 결산승인 신청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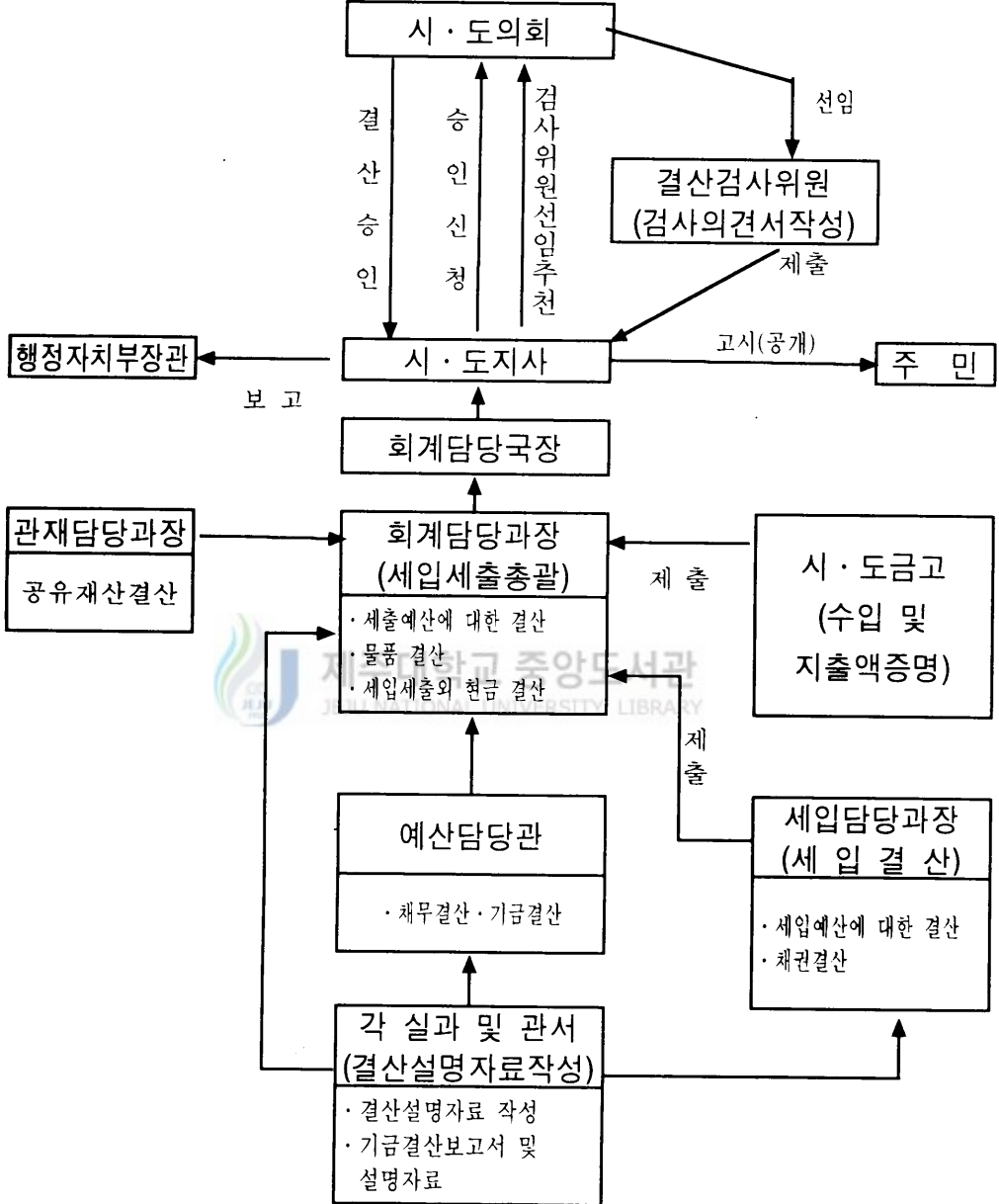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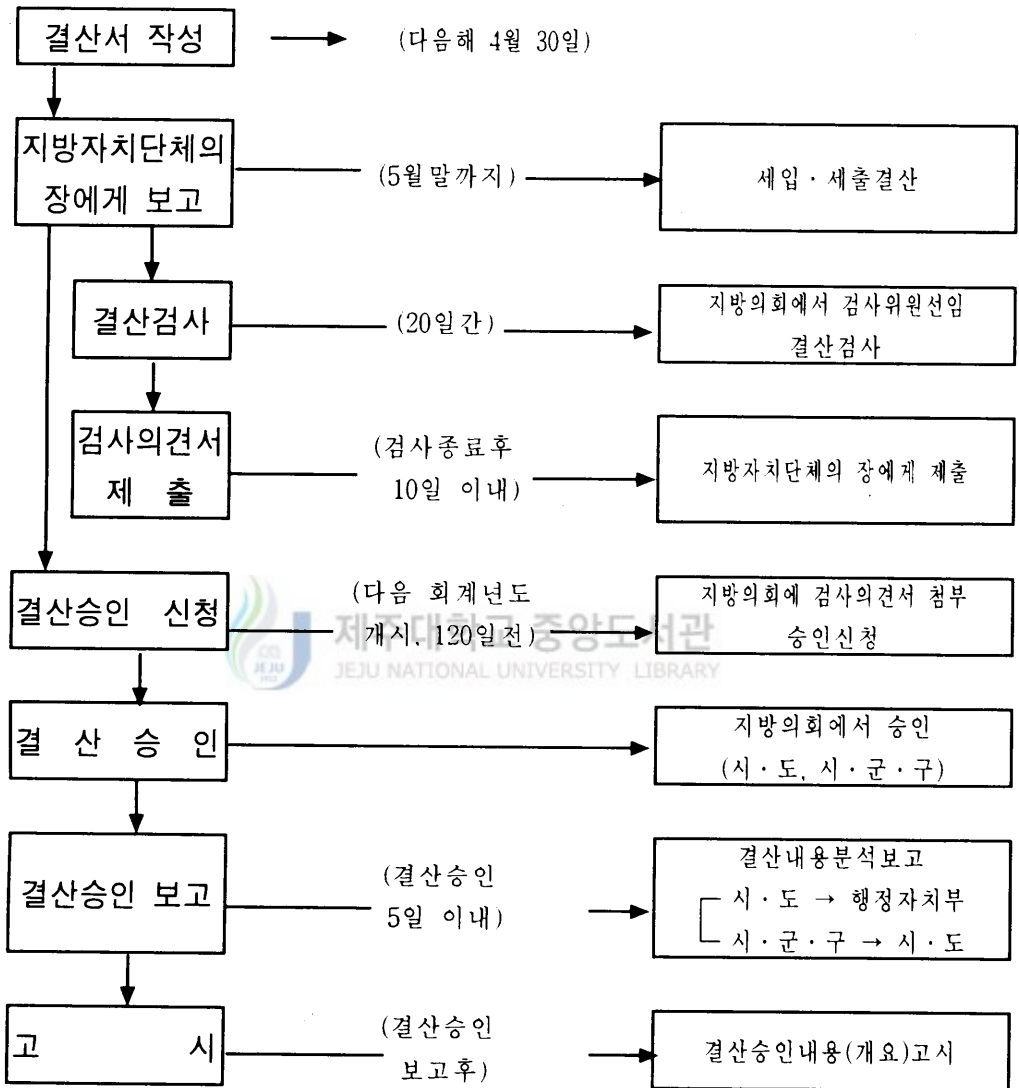


그림 2-6. 결산 검사 및 승인



3.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일반원칙

(1)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3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며, 1년간의 수지균형을 도모하고 그 정리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년도 세입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는 ㉠ 계속비 ㉡ 세입예산의 이월(명시 및 사고이월) ㉢ 결산상 잉여금의 이월 ㉣ 과년도 수입과 지출 ㉤ 익년도 수입과 조상충용²²⁾ 등이 있다.

(2) 출납정리기한(지방재정법 제4조)

예산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고 세입과 세출사무도 회계연도 말까지 정리 완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출납고지를 하였거나 지출원인행위를 필한 미결사무 등 수입과 지출의 정리에 요하는 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정리기한을 두는데, 그 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로 하고 있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의 금고 수납은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0일간 더 연장할 수 있다.

(3) 출납사무의 완결(지방재정법시행령 제5조)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계장부마감, 결산상 잉여금 처리, 결산설명 자료 징구 등)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완결하여야 한다.

(4) 회계연도 소속 구분

예산회계에서는 현금의 유출과 관계없이 지출원인행위를 기록하는 반면 일반회계에서는 현금주의를 따르고 있다. 정부회계가 발생주의가 아닌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보유의 고정자산 평가와 공공서비스에

22) 조상충용(繰上充用) : 당해년도내의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함에 있어 부족이 생길 경우 다음연도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대한 비용 산정시의 원가 평가에 있어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는 회계연도 소속 구분에 있어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은

㉠ 납기가 정해져 있는 수입은 그 납기말일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납기소속의 회계연도 내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 수시 수입으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그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수시 수입으로 기본 수입에 부수되는 수입은 그 기본 수입이 속하는 연도

㉢ 수시 수입으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지 않는 것은 그 영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지방채증권·차입금·부담금·교부금·보조금·기부금·상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수입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

㉣ 수시 수입으로 계약에 의해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된 것은 그 계약한 날이 속하는 연도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은

㉠ 지방채의 원리금은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

㉡ 각 종 반환금·결손보전금·상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

㉢ 부담금·교부금·보조금·기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

㉣ 실시보상·급여·여비·수수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생긴 날이 속하는 연도

㉤ 사용료·보관료·전기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 지급을 하여야 할 사실이 생긴 날이 속하는 연도

㉥ 공사 제조비·물건구입비·운반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출납폐쇄기한까지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것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현금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현행의 회계는 원칙적으로 현금주의에 의한 단식부기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5)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지방재정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히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6)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지방재정법 제14조)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을 지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7) 출자의 제한(지방재정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타 단체에 출자할 수 없다. 다만 ㉠ 법령에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해진 단체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에의 출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출자할 수 있다.

(8) 지출 및 지급의 원칙(지방재정법 제53조, 재무회계규칙 제50조)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채주에게 지급하되, 10만원 이상 대가 지급 시는 정당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9) 회계기관 분립(지방재정법 제57조)

분야	명령계통	집행계통
수입	징수관	수입금출납원
지출	경리관	지출원
물품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4. 재무보고제도

(1) 결산보고서의 의의와 종류

현행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에서 결산이란 특정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집행실적을 표시하기 위하여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결산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²³⁾ ① 결산을 통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활동을 수행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예산과 실제를 대비하고 결산내용을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장래의 재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보고서는 일정 회계연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재무활동을 화폐단위로 표시한 보고서로, 기업의 재무제표와 성격이 같다. 그러나 기업의 재무제표에는 경영성과와 재무상태가 표시되는 데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보고서에는 회계연도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수납한 세입액과 지출한 세출액,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상의 잉여금 처리상황과 회계연도 말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기금결산보고서, 채권·채무 현재액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2) 결산보고서의 공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은 민주적 재정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공시를 하도록 한 것은 주민의 감시를 위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시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 대상이 주민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보다 적극적인 고시를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고시의 대상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²⁴⁾

23) 권찬태, 이중희, “지방자치회계제도의 한·미·일 비교연구”, 회계저널 제3호, 한국회계학회, 1995. P.366.

1994년 12월 22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보면 「제118조의 3항」 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등에 관한 조문이 신설되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5. 영리기업 및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차이

현행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정부고유의 행정기능에 관한 일반회계와 특정사업의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로 구분된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회계와 같은 공기업형 회계와 특정자금 등에 의한 필요에 따라 기금형 회계로 구분 운용되고 있으며, 기업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회계는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식부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영리기업과 단식부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처리를 비교하면 <표 2-1>과 같다.²⁴⁾

표에 의하면, 영리기업 및 지방공기업과 일반회계의 회계관리는 부기방법, 회계처리기준, 결산기준일, 결산서류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회계관리의 최종목표는 동일함을 결산서류에서 읽을 수 있다. 영리기업의 대차대조표상에는 일반회계의 결산서인 채권·채무·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 기록관리로 채권·채무·재산 및 물품관리가 하나의 표로 집합 연계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상태의 파악을 위해서는 실사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현금주의를 채택하므로 인해 일정기간의 출납정리기간을 두어 결

24) 조정환, 이중희,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책임에 관한 연구”, 경상논집, 경북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제19권 4호, 1991, pp.37-38.

25) 조태형, op.cit., p 62.

산을 마감함으로 인해 신속한 정보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표 2-1. 영리기업 및 지방공기업과 일반회계의 차이점 비교

구분	영리기업 및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일반·특별회계)
부기방법	· 복식부기	· 단식부기
회계처리기준	수익 : 실현주의 비용 : 발생주의	수익 : 현금주의 비용 : 현금주의
결산기준일	· 당해년도 말일 기준	· 당해년도 말일 기준 · 징수결정 미수납액 정리 (익년도 2월 말일) · 채무확정미지급액 정리 (익년도 2월 말일)
결산서류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자금운영계산서	· 세입세출 결산서 · 기금결산보고서 · 채권 현재액보고서 · 채무결산 보고서 ·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6. 우리나라 현행 지방자치단체회계의 문제점

정부부문에서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공회계책임을 평가하고 경제·사회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회계제도의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는 회계적 개념에 입각한 제도라기보다는 관련법규에 의한 범조문적 성격을 지닌 법규로 실무적 지침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인식기준

수익과 비용의 개념 대신 재원의 조달과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수입과 지출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현금주의에 기초하여 현금의 흐름과 통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현금주의에서는 실제현금수입(지출)이 없는 미수수익(미지급비용)은 당해 회계연도에는 계상되지 않고 현금이 수취(지급)되는 시점에서 수입(지출)으로 처리된다. 또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출로 처리되지 않는다.

현금주의는 수익과 비용을 현금의 수지에 따라 인식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현금주의에서는 거액의 채무부담이 있어도 현금이 지출되지 않으면 이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고, 감가상각이나 대손충당금 등이 지출예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없이 지출예산에서 지출되는 등 회계기간별 수지가 명확하지 않아 특정 회계실체의 실제로 발생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로 인한 활동결과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2) 측정 및 평가기준

회계학적 의미에서의 자산과 부채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자산과 부채 중에서 일부분만 각각 별도의 장부에서 기록되고 있다. 또한 정부 등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나타내는 채권·채무와 법적 소유권을 나타내는 재산과 물품 등의 개념만 규정되어 있을 뿐으로, 미래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부채가 정확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회계처리

신뢰성과 객관성이라는 회계상의 기본원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회계기록의 검증 수단이 회계절차상 또는 장부조직상 갖추어져야 한다. 각종 장부간에 계산상 유기적인 관련성이 없이 각각 독립적인 입장에서 기록이 이루어지는 현행 정부회계에서는 이와 같은 장부조직상의 계수적인 자기검증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록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관련

원시기록을 하나하나 대조하거나 실시하는 방법밖에 없어 현행의 회계구조 아래서는 정확성에 대한 검증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4) 재무보고 및 회계기준

우리나라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련보고서는 주로 수지계산서 뿐이며 결산보고서의 각 과목별 원천장부는 단일장부이거나 비망적 기록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련 제 규정은 예산, 재정 및 회계가 혼합되어 있으며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이라기 보다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사무관리의 지침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결산보고서는 회계의 목적인 이해관계자 집단의 경제적·사회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보다는 예산의 편성내역에 따라 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정확한 수지계산과 회계보고를 통한 체계적인 예산운영과 다양한 이해자집단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법률과 예산의 제약으로 수탁관리책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운영상 경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정목적이 서로 다른 관련법률에 의해 자산, 부채, 재산, 잉여금 등이 다기화되어 기록·보고됨으로 인하여 특정 정부단위의 전반적인 효율성이나 성과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²⁶⁾

이상의 문제점들을 요약하면 < 표 2-2 >와 같다.

표 2-2. 우리나라 현행 정부회계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문제점²⁷⁾

분류	문 제 점
인식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액의 채무부담이 수지결산서에 반영안됨 ·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미구분 · 예산상 미계상된 지출은 다음 회계연도에서 처리

26) 권수영, “우리나라 정부회계기준의 정립을 위한 고찰”, 회계저널 제3호 한국회계학회, 1995. pp. 333-334.

27) 권수영, 김선구, “정부부문에서의 발생주의회계/복식부기제도 도입 및 추진방안”, 회계저널, 1999. 6., p.291

측정 및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과 부채 중에서 일부만 별도의 장부에 기록되어 재산상태를 정확히 표시하지 못함 · 자산가치의 파악이 어려움
회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회계보고서는 수지계산서, 원천장부는 단일장부, 비망기록에 불과 · 유기적 관련성, 계수적 자기검증 수단이 없음
재무보고 및 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보고수단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 · 제 목적에 따라 제정된 정부회계처리 및 보고관련 법률·규정이 변경될 경우 회계정보의 일관성 침해

제 3 절 미국의 지방정부회계제도

1. 회계의 목적

재무보고는 회계활동의 산출물이므로 회계의 목적은 재무보고의 목적이 라고도 할 수 있다. 재무보고의 목적은 현행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가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상적인 회계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정부회계기준위원회(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 Board, GASB) 개념보고서 제1호인 「재무보고의 목적(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은 기존의 기준과 관례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재무보고 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정부회계기준위원회가 사용해야 할 개념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정부회계기준위원회는 이 개념보고서에서 주 및 지방정부의 재무보고 목적이 외부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는 재무보고의 목적을 정립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개념으로 보고책임(accountability)과 기간간의 형평성(interperiod equity)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회계기준위원회는 ㉠ 보고책임은 기업의 재무보고에 있어서 보다 정부의 재무보고에 있어 더욱 중요하며, ㉡ 보고책임은 모든 정부재무보고의 기초가 된다.²⁸⁾ 여기서 보고책임이란 예산 기타 법규를 준수하고 자금의 유입, 유출 및 잔액을 기록·보고하는 수탁관리책임은 물론 정부사업의 달성여부, 나아가 그 사업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한 운영관리책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a right to know)에 기초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기간간의 형평성이란 균형예산의 개념으로 당기의 지출이 얼마만큼 당기의 수익에 의해 조달되었는지 또한 미래의 납세자가 과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지에 관한 문제로 회계연도간, 공무원의 임기간 및 세대간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재무보고는 특정회계연도에 ㉠ 잉여금이 창출되었는지(미래의 시민에게 혜택) ㉡ 결손금이 발생하였는지(미래의 시민에게 부담) ㉢ 전기의 잉여금이 당기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지(현재의 시민에게 혜택) ㉣ 전기의 결손금이 당기의 수익에 의해 충당되었는지(현재의 시민에게 부담) ㉤ 당기의 지출이 당기만의 수익에 의해 조달되었는지(균형예산)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기간간의 형평성은 보고책임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정부회계기준위원회 개념보고서에서는 주 및 지방정부의 재무보고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가) 재무보고는 재무보고 이용자들이 정부의 보고책임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부의 공공책임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당해년도 수익이 당해년도의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충당할 수 있었는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28) GASB, op. cit., Par.56.

㉠ 법적으로 채택된 예산에 따라 자원의 조달 및 사용되었고 기타 재정 관련 법규나 계약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재무보고 이용자들이 정부가 제공한 서비스의 노력, 원가 및 그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나) 재무보고는 재무보고 이용자들이 정부실체의 당해년도 운영결과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 재무자원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부실체가 그 활동자금을 어떻게 조달하였으며, 소요자금을 어떻게 충족하였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당해년도의 운영결과 정부실체의 재무상태가 개선 또는 악화되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재무보고는 정부실체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수준과 만기가 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 정부실체의 재무상태와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당해년도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유형자산 및 기타 비재무적 자원에 관한 정보와 이들 자산의 서비스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자산에 대한 법적, 계약적 제약과 잠재적 손실 위험을 공시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주 및 지방정부의 재무보고 목적은 정부회계기준위원회의 정부회계 및 재무보고 기준집에서 제시·설명되는 12개의 회계원칙이 반영되어 있다. 이 회계원칙은 1979년 NCGA(National Committee on Governmental Accounting, 정부회계전국위원회) 보고서 제1호 「정부회계 및 재무보고

원칙」으로 공표 되었으며, NCGA가 GASB로 대체되면서 정부회계의 기본 원칙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회계원칙은 주 및 지방정부의 회계와 보고실무에 관한 객관적인 12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 회계 및 보고기능

정부회계시스템은 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에 따라 정부단위(정부실체)의 펀드와 계정그룹의 재무상태와 재무운영의 결과를 적정하고 완전하게 공시할 수 있어야 하며, ② 재무와 관련된 법규 및 계약조항의 준수여부를 결정·증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GAAP에 따라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법규 및 계약 준수여부를 나타내는 별도의 명세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펀드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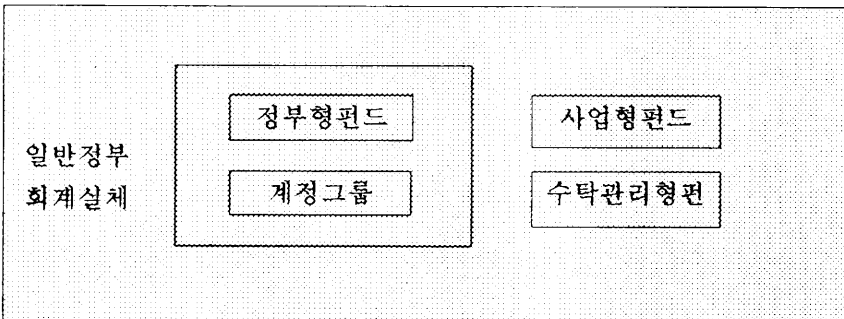
정부회계시스템은 펀드를 기초로 조직 및 운영되어야 한다. 여기서 펀드는 특수한 규정, 제약 또는 제한에 의해서 특정활동을 수행하거나 특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분리되어 있는 현금과 기타의 재무자원과 이와 관련된 모든 부채나 잔여지분(또는 잔액), 그리고 이 항목들의 변동을 기록하는 자체적으로 대차계정을 갖는 계정들의 재정 및 회계실체로 정의한다.

재정실체는 사용 가능한 자원을 가진 독립적으로 예산을 갖는 실체를 말하며, 회계실체는 독립된 재무단위로 자산은 부채와 펀드잔액의 합이라는 등식을 갖는다. 여기서 펀드잔액은 소유주 지분이 아니라 단순히 자산과 부채의 차액을 나타낸다. 펀드가 자체적으로 대차계정을 갖는다는 것은 차변과 대변의 구조로 거래 및 사건을 기록하고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장기부채와 일반고정자산은 독자적으로 대차계정을 갖는 계정들이긴 하지만 거래를 갖는 재정실체는 아니므로 펀드는 아니다.

주 및 지방정부의 회계실체는 <그림 2-7>²⁹⁾과 같다.

여기서 계정그룹이란 일반정부의 고정자산과 장기부채의 회계기록이 대차평균을 이루도록 하는 집합으로 고정자산과 장기부채의 통제목적으로 사용되는 비망적 성격의 계정체계이다.

그림 2-7. 주 및 지방정부 회계실체



(3) 펀드의 유형

주 및 지방정부가 사용해야 할 펀드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 정부형펀드(Governmental Funds)

소모성펀드(expendable)로 정부의 다양한 고유기능(일반행정, 방위, 치안, 사회 및 경제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용되는 재무자원의 회계처리에 사용된다.

정부형펀드회계는 당기순이익보다는 펀드의 재무상태 변동인 재무자원의 원천, 사용 및 잔액을 측정한다.

① 일반펀드(General Fund)

다른 펀드로 계상되지 않은 모든 재무자원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펀드

② 특별수익펀드(Special Revenue Fund)

특정목적에 사용되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특별수입의 재무자원(소모성 수탁 또는 자본시설취득 목적 이외의 재무자원)에서 발생한 자금을 회계처

29) 윤성식, 권수영, op. cit., 1999. p.377.

리하기 위한 펀드

③ 자본시설취득펀드(Capital Projects Funds)

주요 자본시설의 취득 또는 건설(사업형펀드 및 수탁펀드에서 자금이 조달되는 경우는 제외)에 사용할 재무자원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펀드

④ 부채상환펀드(Debt Service Fund)

일반장기부채의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을 위한 재원의 축적과 그 원금 및 이자의 지불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펀드

(내) 사업형펀드(Proprietary Fund)

비소모성펀드로 사업형펀드는 당기순이익, 재무상태, 재무변동을 측정하며, 이 펀드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은 대부분 사기업에서도 적용되는 원칙들이다.

① 기업펀드(Enterprise Funds)

사기업과 유사한 방법으로 자원을 조달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일반 시민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원가(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는 비용)가 주로 이용자의 부담에 의하여 조달·회수되는 사업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펀드 또는 정부기관이 자본설비유지, 공공정책, 경영통제, 보고책임 및 기타 목적을 위하여 수익과 비용 및 순이익의 주기적인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회계

② 내부서비스펀드(Internal Service Fund)

정부단위의 한 부서가 타부서 또는 타정부단위에게 원가보상기준에 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자금의 조달 및 운영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펀드

(내) 수탁관리형펀드(Fiduciary Funds)

수탁형펀드는 정부가 개인, 사기업 또는 다른 정부단위를 위해서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회계처리에 사용된다. 소모성수탁펀드의 회계는 정부형펀드와 유사하고, 비소모성수탁펀드와 연금펀

드의 회계는 사업형펀드와 유사하다.

① 수탁 및 대리펀드(Trust and Agency Funds)

정부단위가 개인, 사적조직, 타정부 기관 또는 타펀드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록하기 위한 펀드로 소모성수탁펀드, 비소모성수탁펀드, 연금수탁펀드 및 대리펀드가 있다.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에 의해 제안된 펀드의 여러 형태는 ① 펀드의 재무자원이 소비되어야 하는지(정부형펀드) 아니면 자체적으로 재무자원이 유지되어야 하는지(사업형펀드), ② 예산통제가 행해지는 정도에 준하여 구분된다. 그리고 정부형펀드와 이와 유사한 수탁형펀드의 유형은 재무자원의 일반적인 활동, 특정목적(자본시설 취득 및 부채상환), 사업계획 중에서 어디에 사용되느냐 또는 수탁관리인 및 대리인으로서 펀드가 설정·운영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4) 펀드의 수

정부단위는 법규와 건전한 재무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펀드를 설정·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필요한 펀드의 설정은 경직되고 과도하게 복잡하며 비효율적인 재무관리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규 및 운영요건에 부합되는 최소한의 펀드만을 설정하여야 한다.

(5) 고정자산과 장기부채의 회계

펀드고정자산과 일반고정자산 그리고 펀드장기부채와 일반장기부채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

① 특정 사업형펀드나 수탁펀드와 관련된 고정자산은 그 펀드에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정부의 기타 모든 고정자산은 일반고정자산계정그룹을 통하여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② 사업형펀드와 수탁펀드의 장기부채는 그 펀드에서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정부의 기타 모든 장기부채는 일반장기부채그룹을 통하여 회계처리 되어야 한다.

(6) 고정자산의 평가

고정자산은 원가로 기록되어야 하며, 취득원가를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추정원가로 기록되어야 한다. 수증고정자산은 증여시 추정된 공정가치로 기록되어야 한다.

(7) 감가상각

① 일반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부형 펀드의 회계장부에 기록되어서는 안된다. 일반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원가회계시스템에서 기록되거나 원가 분석을 위하여 계산될 수 있으며, 또한 감가상각누계액도 일반고정자산계정그룹에서 기록될 수 있다.

② 사업형펀드에서 회계 처리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그 원장에 기록되어야 한다. 감가상각은 비용, 당기순이익 및 자본유지가 측정되는 수탁펀드에서도 인식되어야 한다.

(8) 발생기준

수정발생기준 또는 발생기준이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측정하는데 적절히 사용되어야 한다.

① 정부형펀드의 수익과 지출은 수정발생기준에 따라 인식되어야 한다. 수익은 사용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회계기간에 인식되어야 하며, 지출은 측정 가능하다면 펀드부채가 발생한 회계기간에 인식되어야 한다. 단, 일반장기부채에 대한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은 이자는 지급일 도래 시점에서 인식된다.

② 사업형 펀드의 수익과 비용은 발생기준에 의해 인식된다. 수익은 가

득 과정이 완료되고 측정 가능하게 된 회계기간에 인식되어야 하며, 비용은 측정 가능하다면 발생한 회계기간에 인식되어야 한다.

③ 수탁형 펀드의 수익과 비용 또는 지출은 펀드회계의 측정목적에 부합되는 기준에 따라 인식되어야 한다. 비소모성수탁펀드와 연금펀드는 발생기준에 따라서, 소모성수탁펀드는 수정발생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

④ 펀드간의 이전은 펀드사이의 채권·채무가 발생한 회계기간에 인식된다.

(9) 예산, 예산통제 및 예산보고

① 각 정부단위는 연간예산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회계시스템은 적절한 예산통제의 기준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연간예산이 채택된 정부형펀드에 대한 적절한 재무제표와 명세표 안에는 예산과 실제와의 비교가 포함되어야 한다.

(10) 이전, 수익, 지출 및 비용계정의 분류

① 펀드간의 이전과 일반장기부채의 발행대금은 펀드의 수익, 지출 또는 비용과는 구분하여 분류되어야 한다.

② 정부형펀드의 수익은 펀드별, 원천별로 분류되어야 한다. 지출은 펀드별, 기능별(또는 프로그램별), 조직단위별, 활동별, 성질별 및 목적의 주요 범주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③ 영업펀드의 수익과 비용은 이와 유사한 기업의 조직별, 기능별 또는 활동별로 분류되어야 한다.

(11) 공통의 용어 및 분류

공통된 용어 및 분류가 예산, 계정과목 및 각 펀드의 재무보고에서 일관

성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12) 기중 및 연말 재무보고

① 재정운영의 관리통제와 입법부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고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경우 재무상태, 운영성과 및 기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적절한 기중 재무제표와 보고서가 외부보고 목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② 서론부분, 적절한 결합재무제표, 결합대차대조표 및 각종 펀드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보충적 정보, 부속명세서, 서술적인 설명, 통계표 등이 포함된 보고실체의 모든 펀드와 계정그룹을 포함한 포괄적인 연도별 재무제표가 작성·공표되어야 한다.

③ 포괄적인 연도별 재무보고서와 별도로 일반목적의 재무제표가 공표될 수 있다. 그러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와 운영결과(영업펀드와 그와 유사한 수탁펀드의 재무상태의 변동내용)를 적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기본재무제표와 주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재무제표와 함께 필수적인 보충정보도 보고되어야 한다.

④ 서론부분, 적절한 결합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및 개별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요한 보충적 정보, 명세서, 서술적 설명 및 통계표를 포함한 각 구성단위의 모든 펀드와 계정그룹을 포함하는 구성단위 재무보고(component unit financial statement)는 필요에 따라 작성·공표될 수 있다.

⑤ 구성단위 재무제표가 구성단위 재무보고와 별도로 발행될 수 있다. 구성단위 재무제표는 재무상태와 운영성과(사업형펀드와 비소모성 수탁펀드의 재무상태 변동)를 적절히 나타내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재무제표와 주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재무제표와 함께 필요한 부속정보도 보고되도록 요구될 수 있다.

3. 펀드회계와 예산회계

(1) 펀드회계

미국의 지방정부는 회계목적상으로는 하나의 통합된 실체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펀드라는 보다 작은 회계실체들의 집합으로 취급된다. 펀드란 특별규정 또는 제한에 따라 특정활동을 수행하거나 특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분리되어 있는 현금 및 기타 재무자원,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부채의 잔여지분들의 변동을 기록하는 자기균형을 이루는 계정을 가지는 재정실체이자 회계실체³⁰⁾로 정의된다. 여기서 재정실체란 사용 가능한 자원을 가진 별개의 독립 예산을 갖는 실체를 의미하며, 회계실체란 독립된 재무단위로서의 보고실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고정자산계정그룹이나 일반장기부채계정그룹은 각각 하나의 회계실체이기는 하나 독립된 재정실체가 아니므로 펀드가 아닌 것이다.

펀드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정부형펀드와 사업형펀드로 나눌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관리형펀드 중 소모성수탁펀드와 대리펀드는 정부형펀드로, 비소모성수탁펀드와 연금펀드는 사업형펀드로 분류할 수 있다. 정부형펀드의 목적은 사업형펀드의 목적과 크게 다르다. 그 차이는 측정초점과 인식기준상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³¹⁾

측정초점(measurement focus)이란 회계담당자가 펀드의 운영수지계산서를 작성할 때 무엇을 측정하고 보고하려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으로, 예를 들면, 사업형펀드의 운영계산서는 “회계년도 중에 발생하는 경제적 사건 및 거래의 결과 이 펀드는 경제적으로 좋아졌는가 또는 나빠졌는가 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 작성된다. 즉, 사업형펀드의 측정초점은 펀드의 경제적 입지이다.

30) GFOA, Governmental Accounting, Auditing and Financial Reporting, Government Finance Officers Association, 1994. pp.11-12.

31) ibid. pp.19-24.

사업형펀드의 경제적 입지를 개선하는 사건 및 거래는 운영수지계산서에서 수익 또는 이득으로 보고되고, 경제적 입지를 떨어뜨리는 사건 및 거래는 비용 또는 손실로 보고된다. 반면 정부형펀드의 측정초점은 펀드의 유동재무자원의 흐름이다. 즉, 정부형펀드의 운영수지계산서는 회계년도 중에 발생하는 사건 및 거래의 결과 가까운 장래에 소비될 수 있는 재무자원이 많아졌는지 또는 적어졌는지에 초점을 둔다. 소비가능자원의 증가는 운영수지계산서에 수입 또는 기타 원천으로, 소비가능자원의 감소는 지출 또는 기타 사용으로 보고된다.

펀드의 인식기준은 펀드의 운영수지계산서 작성을 위해 경제적 거래 또는 사건이 언제 인식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사업형펀드는 발생주의 기준을 사용한다. 즉 경제적 거래와 사건은 그와 관련된 현금의 수입·지출과는 관계없이 그 거래와 사건이 발생한 때에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된다. 반면에 정부형펀드는 수정발생주의 기준을 사용한다. 즉, 경제적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것만으로는 그 거래나 사건이 운영수지계산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현재 소비 가능한 자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 거래나 사건에 관련된 현금의 수입 또는 지출이 가까운 장래(보통 90일 이내)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수입은 유동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현금수입액을 측정할 수 있고 또한 가까운 장래에 사용할 수 있을 때에만 인식된다. 마찬가지로 지출은 경제적 거래나 사건에 의해서 현재 소비 가능한 자원이 가까운 장래에 소비될 것이 기대될 때에만 인식된다.³²⁾

(2) 예산회계

예산은 정부회계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간예산의 채택은 정부회계의 기본원칙으로 간주된다. 예산의 중요성 때문에 회계시스템은 예산을 고려하여 특별히 설계되어야 한다. 즉, 승인된 예산은 회계시스

32) 박해근, "지방정부 회계제도의 한·미간 비교연구",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경영경제 제29집 2호, 1996. p60.

템에 통합되어야 한다. 예산을 회계시스템에 통합시킨다고 하는 것은 세입 예산 중 징수되지 않은 수입, 즉 추정수입의 잔액에 관한 정보와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세출예산잔액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³³⁾

예산을 통합한 회계시스템에서 추정수입의 잔액에 관한 정보는 보조원장인 수입원장에서 추정수입란과 실제수입란을 유지·기록함으로써 얻을 수 있고 지출이 확정되지 않은 세출예산잔액에 관한 정보는 보조원장인 세출예산-지출원장에서 세출예산란, 지출원인행위란 및 지출란을 유지·기록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4. 재무보고제도

정부회계기준위원회 규정집은 필수적인 연차보고서의 유형을 논의하고 보고 및 재무제표를 설명함에 있어 <그림 2-8>에 제시된 바와 같은 피라미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³⁴⁾

포괄적 연차재무보고서의 재무부분은 보고 피라미드(reporting pyramid)로 간주할 수 있다. 개별적인 펀드와 계정그룹의 재무상태와 운영결과를 보고하고, 재무관련 법적·계약적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보여주며, 각 펀드 실체수준에서 적절한 공시가 이루어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보고내용의 상세한 정도를 증가시키는 측면에서 보고 피라미드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 필요가 있다.

피라미드 계층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목적 재무제표(결합재무제표 - 개관)

이 기본 재무제표는 모든 펀드와 계정그룹의 재무상태와 운영결과를 요약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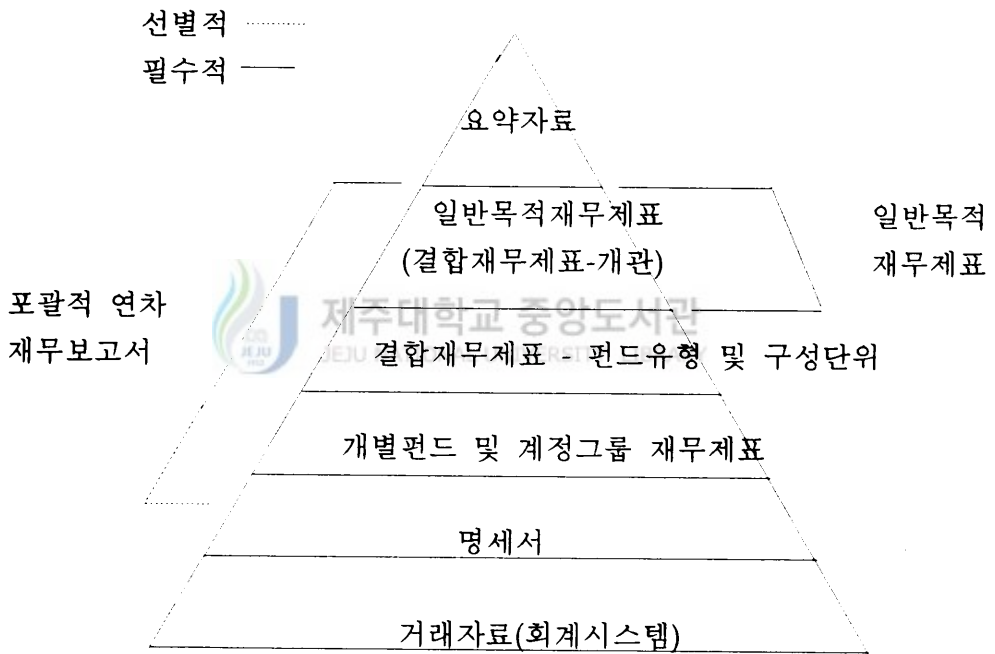
33) GFOA, op.cit., pp.19-24. 1994.

34) GASB Codification, sec.1900, pp.115-116.

② 결합재무제표 - 펀드유형별

정부단위가 일정한 유형의 펀드를 한 개이상 설정한 경우에는 그 유형의 모든 펀드를 합하는 결합재무제표가 작성되어야 한다.

그림 2-8. 재무보고 피라미드³⁵⁾



③ 개별 펀드 및 계정그룹 재무제표

이 재무제표는 정부단위가 특정 유형의 펀드가 하나이거나 또는 재무보고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충분한 공시를 보장하기 위해서 충분히 상세한 정보가 합계재무제표에 제시되지 않았을 때 개별 펀드의 계정그룹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 이 재무제표는 예산자료 또는 전년도 비교자료를 제시하

35) 자료 : GASB Codification, Sec.1900. 114.

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④ 명세서

명세서에 제시된 자료는 재무제표의 주석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을 준수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 명세서는 재무관련 법적·계약적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보여주거나 유용하다고 간주되는 다른 정보를 제시하고 재무제표에 요약된 자료를 상세히 나타내주기 위해 사용된다.

피라미드의 맨 위는 총체적이고 통합된 축약자료인 반면 피라미드의 맨 아래 부분은 정부단위의 실제 개별 거래 및 사건을 포함하는 매우 자세하고 부피가 큰 보고서이다. 정부회계기준위원회(GASB)는 적절한 보고방법이 이 두 극단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기관이 공표해야 할 포괄적 연차재무보고서의 내용은 서설부분(introductory section), 재무부분(financial section) 그리고 통계부분(statistical section)으로 <표 2-3>과 같다.

표 2-3. 포괄적 연차재무보고서 내용

서 설 부 분	
GASB에 의해 요구되는 구성요소	기타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차· 전달서한· 기타 중요한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공직자· 조직도표· GFOA 증명서

* GFOA(Government Finance Officers Association) : 주 및 지방정부에 종사하고 있는 정부회계담당자 전국전문가 조직.

재 무 부 분

감 사 보고서	<p>일반목적 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개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합대차대조표 - 모든 유형의 펀드와 계정그룹 · 결합수익, 지출 및 펀드잔액 변동 계산서 - 모든 정부형펀드 · 결합수익, 지출 및 펀드잔액 변동 계산서-예산과 실제, 연간예산이 법적으로 채택되는 일반펀드, 특별펀드 및 유사 정부형펀드 · 수익, 비용, 지분(잉여금)변동계산서-기업형펀드 · 결합현금흐름표-모든 사업형펀드 · 주식 · 필수적인 보충적 정보-연금관련 정보의 10년간 추세 	<p>결합재무제표, 개별펀드 및 계정그룹 재무제표, 명세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합재무제표-펀드유형별 (정부단위가 특정펀드에 대해 1개 이상의 펀드를 갖고 있는 경우) · 개별펀드 재무제표와 계정그룹 재무제표-정부단위가 특정 유형의 펀드나 계정그룹이 1개 있거나 전년도 및 예산과의 비교를 위한 경우 · 명세서-재무관련 법적·계약적 조항의준수를 보여주고, 재무제표와 같이 특정 정보를 좀더 상세하게 제시하기 위해 그 밖에 별도로 결합재무제표, 펀드 및 계정그룹 재무제표, 명세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화식 설명이 포함될 수 있음.
------------	---	---

통 계 부 분

<p style="text-align: center;"><u>최근 10년간 자료에 대한 통계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정부의 기능별 지출 · 원천별 일반 수익 · 재산세 부과액 및 수납액 · 과세대상 재산의 평가 및 실제추정 가치 · 재산세율-모든 관련 정부기관 · 특별 부과금 수납액 · 순일반담보공채의 장부가치 대 추정 가치비율, 1인당 순담보공채액 · 일반담보공채의 상환액 대 일반지출의 비율 · 수익공채 범위 · 재산가치, 건축물, 은행예금 	<p style="text-align: center;"><u>기타 통계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부채 마진의 계산 · 중복 부채의 계산 · 인구통계자료 · 주요 납세자 · 기타 통계자료
--	---

제 4 절 우리 나라와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비교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를 전체적으로 비교·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회계기준

정부회계기준이란 정부가 경제적 사건을 측정하고, 기록, 분석, 요약, 보고하는 절차와 제반 사항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기업이 외부에 보고하는 재무제표는 조직에 대한 정보를 기업의 이해관계자 집단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외부에 보고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이는 정부가 국민에 대해 정부가 주어진 책임을 다했음을 확인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일정한 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해야 한다. 정부회계기준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자의적인 재무제표를 배제하고 정보의 왜곡을 방지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직간의 비교를 가능케 하고 동일한 조직의 과거 정보와도 비교할 수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 회계는 일반회계원(General Accounting Office, GAO),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그리고 연방회계기준권고위원회(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 FASAB)의 공동 관할하에 있으며³⁶⁾, 연방정부 회계기준은 ① Treasury Financial Manual ② GAO Policy & Procedure Manual for Guidance of Federal Agencies, Title 2-Accounting ③ US. Government Standard General Ledger이라는 3가지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주 및 지방정부 회계는 정부회계기준위원회의 정부회계 기준을 따르는데, GASB의 정부회계기준은 Codification of Governmental Accounting &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as of May 31, 1990(GASB, 1990)에 규정되

36) J.H. Engstrom and L.E. Hey, op. cit., p.234.

어 있다.³⁷⁾ 연방정부가 일반회계원, 재무부 및 예산관리실에 의해 제정된 연방정부회계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과는 달리 정부회계기준위원회의 회계기준은 주 및 지방정부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이 정부회계기준위원회의 정부회계기준을 요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지방정부의 신용을 낮게 평가함에 따라 재정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정부회계기준위원회의 정부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정부회계기준위원회의 통일된 정부회계기준이 제정되어 이를 준수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회계학적인 의미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다만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지방공기업법 및 동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에 의거 회계처리토록 함으로서 법조문적 회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회계내용

우리나라와 미국의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를 회계내용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회계구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그 목적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는데, 일반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수행을 위한 공적 일반활동에 소요되는 세입·세출을 포괄하는 회계이며,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입·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37) Herzlinger, R. E, and D. Nitterhouse, *Financial Accounting and Managerial Control for Nonprofit Organization*, South-Western Publishing Co., 1994, pp.41-43

회계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회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어 경영하는 비권력적 사업을 관리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기타특별회계로 구분된다.

미국 정부회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펀드회계로 정부회계제도는 펀드기준에 의하여 운영된다는 점이다. 정부조직에서는 법률에 의한 제약 및 내부규정의 이행을 나타내야 하므로 상이한 이용목적과 제약을 갖는 자원을 하나의 회계실체로 집약관리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각기 독립된 재정운영실체인 펀드를 설정·운영하는 것이다. 정부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하면 펀드는 크게 정부형펀드(Governmental Funds), 기업형펀드(Proprietary Funds)와 수탁펀드(Fiduciary Funds)로 나누어진다. 또한 펀드고정자산과 일반고정자산 그리고 펀드장기부채와 일반장기부채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일반고정자산과 일반장기부채의 기록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그룹을 설정·회계처리를 한다.

(2) 회계기록방식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는 회계의 기본적인 기술로 하나의 거래가 미치는 영향을 기록·분석·집계하여 정보화하는 방식을 지칭하는 것이다. 단식부기는 거래의 영향을 단 한가지 측면에서 수입과 지출로 파악하여 기록하는 회계방법이고, 복식부기는 모든 회계거래의 기록이 최소한 둘 이상의 계정과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는 이원거래의 개념에 입각하여 기록·집계하는 회계방법이다.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는 상호보완적이어서 둘 중 어느 하나만 적용될 경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복식부기의 유용성은 발생주의 하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복식부기가 단식부기에 비해 갖는 유용성은 ㉠ 부정과 오류의 격감 ㉡ 총체적인 시각에서의 효율적인 정책결정 ㉢ 안전성, 효율성, 활동성 등에 대한 정보제공 ㉣ 성과평가에 유

용한 정보제공 등이다.³⁸⁾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단식부기를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지방정부회계는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다.

(3) 회계인식기준

회계인식기준이란 회계기간동안의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현금의 유입과 유출여부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현금주의(cash basis)와 수익과 비용의 발생인식기준을 충족시키면 거래로 인식하는 발생주의(accrual basis)로 구분된다.

현금주의는 현금이 회수된 시점에서 수익 및 재무자원의 유입을 인식하고, 현금이 지급된 시점에서 비용 및 재무자원의 유출을 인식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현금주의는 단순하기 때문에 이해가 쉽고 확실한 측정이 가능하며 자의적인 회계처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통제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감가상각비가 인식되지 않으므로 소비되는 자원의 양이 과소 인식되고 지불되지 않은 채무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가용자원이 과대평가될 수 있으며, 오직 현금의 변동만을 인식하므로 재무상태 및 재무성과에 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수정현금주의는 현금뿐만 아니라 단기적 재무자원의 흐름에 초점을 맞추는 인식기준을 지칭하는 것으로, 회계기간 후 며칠동안의 유예기간을 두어 회계기간중에 출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입 또는 지출을 이때 수입 또는 지출하는 것을 허용한다.

수정발생주의에서의 수익의 인식은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용인될 수 있을 때에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발생한 것으로 용인될 수 있을 때'란 ㉠ 수익금액이 측정가능하고 ㉡ 당해연도의 지출을 위하여 사용가능한 때를 의미한다. 비용의 인식은 지출금액을 측정할 수 있고 해당 펀드의 부채가

38) 권수영, 김선구, op. cit., pp.296-303.

발생한 회계기간에 이루어진다. 여기서 부채란 당해연도의 당해 펀드 세출 예산에 반영된 재무자원의 유출을 요하는 유동부채를 말하며 당해연도에 사용할 재무자원에서 지급하지 아니할 부채(장기부채)의 발생은 지출로 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수정발생주의는 현금과 단기적 재무자원 뿐만 아니라 장기재무자원까지도 인식하며, 현금의 수납 및 지급시점이 아니라 이들의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서 비용과 수익을 인식한다. 미국의 공인회계사회(1982)는 수정발생주의를 정부형펀드에 가장 효과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³⁹⁾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취와 지급에 관계없이 수익은 획득(실현)된 시점에서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한 시점에서 인식하는 기준이다. 비용은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공헌한 모든 자원의 원가를 수익에 대응시켜 인식한다.

우리나라의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여 전체적으로는 세입과 세출이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는 회계연도 소속구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주의회계는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서 의사결정이 갖는 장단기적 영향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한 여러해에 걸쳐 효익을 제공하는 유형자산을 인정하지 않고 바로 소비로 인식하므로 정확한 비용계산이 곤란하다.

3. 회계정보공시

재무보고의 기본목적 중의 하나는 모든 회계절차를 장부에 기록하여 보고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그러나 품목별로 열거해 놓은 현행 우리나라의 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실체의 자산, 부채 및 수지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 장부간에 계산상 연결성이 없이 독자적인 입장

39) 권수영, 김선구, op. cit., 1999. p.294.

에서 원시기록에 대한 독립적 대조없이 작성되는 현행의 회계관련보고서는 계수상 신뢰성이 결여된다.

우리나라 정부의 재무보고는 ㉠ 법적으로 채택된 예산과 실제 집행된 재무결과를 비교하고 ㉡ 재무관련법률, 규정, 조례 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 정부회계의 관련법규는 수탁책임의 이행을 위한 통제수단이자 관리지침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는 내부관리 보고를 위해서 예산 및 예산집행을 위한 단순기록만 존재하는 것이며 외부의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시스템으로서의 회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즉, 현행의 정부회계는 재정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과거의 기록행태의 답습과 상대적인 단순성과 명료성에 집착하여 단식부기를 이용한 결과 재무보고서가 원시증빙기록에 의한 명세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재무보고는 그 이용자들이 하여금 정부의 보고책임뿐만 아니라 재무상태와 운영결과를 평가하고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⁴⁰⁾

공시와 관련해서는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에 관한 조문이 신설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수탁관리책임(stewardship responsibility)과 보고책임(accountability)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 또는 기금별 회계실체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를 통합적으로 작성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표 2-4>와 같다.

표 2.4. 우리 나라와 미국의 회계제도 비교

<자료 : 박옥순, 전개논문, pp.100-101에서 인용.>

40) 이상봉, “지방정부회계의 환경적 특성과 구조”, 경영경제연구,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영경제연구소, 1999, pp. 226-227.

		우리 나라	미 국
회계기준		①지방자치법·동시행령 ②지방재정법·동시행령 ③지방공기업법·동시행령·규칙 ④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⑤지방세법, 조례	GASB의 GAAP
회계내용	회계구분	①일반회계 ②특별회계 :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①펀드: ㉠정부형펀드 ㉡사업형펀드 ㉢수탁관리형펀드 ②계정그룹
	부기법	①일반회계 - 단식부기 ②기타특별회계 - 단식부기 ③공기업특별회계 - 복식부기	①복식부기
	인식기준	①일반회계 - 현금주의 ②기타특별회계 - 현금주의 ③공기업특별회계 - 발생주의	①정부형펀드 - 수정발생주의 ②사업형펀드 - 발생주의 ③수탁관리형펀드 - 수정발생주의
	감가상각비	①일반회계 - 계상않음 ②기타특별회계 - 계상않음 ③공기업특별회계 - 계상함	①일반고정자산 - 계상않음 ②펀드고정자산 - 계상함
회계정보공시	재무제표체계	①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채권채무보고서 ②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손익계산서 ㉢잉여금계산서 ㉣대차대조표 ㉤자금운용표 ㉥결산부속명세서	①중간재무보고서, 포괄적년차재무보고서 ②포괄적년차재무보고서 ㉠일반목적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개별펀드, 계정그룹보고서 ㉣부속명세서 ③일반목적재무제표 ㉠결합대차대조표 ㉡결합수지펀드잔액보고서 ㉢결합수지펀드잔액보고서 (예산대비) ㉣결합재무상대변동표
	공시방법	예산서 및 결산서를 관보시보 등을 통해 고시한다.	①포괄적년차보고서 및 중간보고서를 대중에게 공표 ②2, 3단계 재무보고는 필요한 수준대로 공시
감사제도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단일감사법에 준거 재무제표의 독립감사 실시

제 5 절 선행연구

1953년 6월에 발행된 회계조사공보 No.43에 의하면, 위원회는 종교, 선단체, 과학, 교육 그리고 유사한 비영리단체의 회계문제 또는 절차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다. 따라서 위원회에 의해 다른 의향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위원회의 의견과 권고는 영리기업에게만 적용되었다.⁴¹⁾ 그러나 회계전문가들이 서서히 정부회계 문제에 관심을 보이면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언스트」와 「휘니」(Ernst & Whinney)⁴²⁾는 100개의 지방자치단체 년차보고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보고된 재무정보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이행한다는 점과 현행의 정부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의 기초가 되는 재무보고 양식과 측정 원칙이라는 2가지 기본적인 면에서 불완전하다.'고 하면서 '양질의 자료는 행정관리자의 의사결정, 대중적 신뢰, 관련정보의 적절한 공시 그리고 자본시장에서의 자원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하므로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부회계 및 보고에 관한 개념적인 연구들도 있다. 예를 들면, 「앤서니」(R. Anthony)⁴³⁾는 그의 연구에서 비영리보고서의 이용자 식별, 그들의 욕구, 가능한 보고서의 발표, 측정 관심과 같은 15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코플랜드」와 「인그람」(R. Copeland & R. Ingram)⁴⁴⁾은 지방자치단체 공시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질적 측정은 수

41) F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Original Pronouncements as of June", FASB, 1982.

42) Ernst & Whinney, "How cities can improve their financial reporting", Ernst & Whinney, 1979.

43) Anthony, "Financial Accounting in Nonbusiness Organization", FASB, 1978.

44) R. Copeland and R. Ingram, *Municipal Financial Reporting and Disclosure Quality*, Addison-Wesley Publishing Co. 1983.

용 가능한 실무의 다양성과 회계수치에 대한 시장 유용성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지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4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 (1)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가?
- (2) 다양한 이용자 집단의 욕구는 유사한가?
- (3) 만일 있다면 공시 결함의 원인은 무엇인가?
- (4) 현재의 공시 결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들은 예측 능력, 발표의 신뢰성, 적절하고 명확한 수탁책임의 개념으로 대체안을 연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어떤 연구는 구체적인 변화를 제안하고 있다. 미시간 대학의 「쿠퍼즈」와 「라이브란트」(Coopers & Lybrand)⁴⁵⁾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시실무를 결정하기 위하여 46개의 도시를 연구했는데, 연구결과 그들은 납세자와 증권투자자들은 도시의 재무상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생한 비용, 지방자치단체 지분의 변화, 재무자원의 흐름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필요로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정보욕구는 기업의 투자자와 채권자의 욕구와 유사하나 저자들에 따르면 정보가 수백 페이지의 상세한 통계수치로 구성되는 기록 속에 묻혀지면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데이비슨」(S. Davison)⁴⁶⁾ 등은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의 거대한 잠재적 이용자 집단 즉,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정부단위의 재무제표는 만일 재무제표가 일반 기업의 그것과 동일한 언어, 동일한 형식으로 표현되고, 동일한 회계개념을 사용한다면 일반 대중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지방자치단체 보고서는 대차대조표, 재무상태 변동표, 지방자치단체 지분운영 및 변동표라는 3개의 기본적인 보고서로

45) Coopers & Lybrand, "Financial Disclosure Practices of American Cities-A Public Report", Michigan Univ., 1976.

46) S. Davison, D. Green, W. Hellerstein, A. Madansky and R. Well, "Financial Reporting by State and Local Government Units", Chicago Univ., 1977.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보고서들은 완전 발생주의를 사용하여 통합 형태로 표현되어야 하고, 나아가 통합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은 지배권부분도 완전히 공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회계학회(AAA)의 비영리조직에 관한 회계위원회는 통합형 재무제표는 추가적인 정보로 제공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통합형 재무제표는 개괄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고 많은 경우 전반적인 개괄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정이 유보된다.(AAA, 1971) 이러한 권고는 1974년과 1975년에 AAA의 위원회에 의해 반복되어졌다.

「앤서니」(R. Anthony)⁴⁷⁾는 펀드회계라고 해서 비영리실체의 재무성과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영리와 비영리조직은 기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자본유지는 양자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헤즈링거와 셔먼」(R. Herzlinger & H. Sherman)⁴⁸⁾은 기업회계가 지방자치단체 회계처럼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펀드회계에 유사한 세분화된 정보는 훌륭한 첫 걸음이 된다고 하면서, 기업보고에서의 점진적 개선은 예산정보의 공개와 저당권 회계의 채택에 의해 성취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단순화는 원가정보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추가적인 정보로서 통합 재무제표를 추가하는 것은 정보의 적화초과를 야기할 것이라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채권과 관련하여 투자자와 증권업자에게 어떤 형태의 정보가 중요한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이엣과 기룩스」(A. Boyett & G. Giroux)⁴⁹⁾는 그들이 재무제표에의 의존도에 대하여 은행업자를 조사했다.

47) R. Anthony, "Making Sense of Nonbusiness Accounting", Harvard Business Review, 1980.

48) R. Herzlinger and H. Sherman, "Advantage of Fund Accounting in Nonprofits", Harvard Business Review, 1980.

49) A. Boyett and G. Giroux, "the Relevance of Municipal Finance Reporting to Municipal Security Decisions", Government Finance, 1978.

연구결과 고정자산에 대한 정보는 유용성에 한계가 있는 반면 부채에 대한 정보는 이들에게 매우 중요하였으며, 더욱이 수정예산이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과 실제의 비교는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졌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재무제표는 유용하다고 하였으나, 재무제표는 상대적으로 유용하기는 하지만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는 재무제표에서 얻지 못 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만일 재무제표가 이용자에게 주요한 정보원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가 쉽고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표현되도록 재무제표를 재 설계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마쉬메이어와 반 데니커」(R. Maschmeyer & R. Van Daniker)⁵⁰⁾는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결정하고 현행 보고 실무에 대한 관심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 결과는 조사 대상자들은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가 의미하는 것을 쉽고 빠르게 읽고 알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가장 유용성이 낮은 보고서로 모든 집단이 대차대조표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코플랜드와 인그람」(R. Copeland & R. Ingram⁵¹⁾)은 The Municipal Finance Officers Association(MFOA)의 구성원인 400명의 CPA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자들은 현행 재무보고제도의 구조는 유지되어야만 한다고 하면서 공시결함의 주된 원인은 불충분한 감사와 정부회계 원칙에 대한 불충분한 지식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공시결함을 위한 최선의 치유책은 간결한 일단의 통일된 정부회계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했다.

「패튼」(J. Patton)⁵²⁾은 지방자치단체 회계자료의 유용성을 조사하기 위

50) R. Maschmeyer and R. Van Daniker, "Financial Information Needs of State and Local Officials", Government Finance, 1979.

51) R. Copeland and R. Ingram, "Municipal Reporting Efficiencies : Cause and Solutions", Government Finance, 1979.

52) J. Patton, "Usefulness of Municipal Financial Reports", Washington Univ., 1975.

한 연구 결과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의 개선을 위한 2가지 가장 보편적인 제안은 (1) 일반인에게 보다 유용하여야 하고 (2) 보고서의 일관성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로만」(K. Roman)⁵³⁾은 후생경제학에서는 개인적인 선호도를 중시하므로 회계정책입안자들은 회계 대체안을 선택할 때 개인적인 선호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채권분석가들은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에 정통한 외부이용자이므로 재무보고서는 분석가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가프니」(M. Gaffney)⁵⁴⁾는 서로 다른 보고서 양식의 인식된 유용성은 이용자가 평가하려 하는 문제에 의존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시민조직의 구성원에게는 보고서의 전반적인 유용성과 중요성은 매우 낮다고 보았다.

「패튼」(J. Patton)⁵⁵⁾은 통합 대 기금별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 양식의 관련 유용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재무관리자협회(Municipal Finance Officers Association, MFOA)의 회원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4개 도시의 재무보고서를 제공하여 통합형과 기금형 등 두 가지 유형의 재무보고와 관련 이익률의 추정치에 관해 다른 효과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보고서의 유형은 이익률 추정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부유도(well-fare)는 대상자들의 기대 수익률 추정치는 물론 기대 수익률 범위 추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시의 규모는 기대율의 오차범위 내의 변화로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고 하였다.

53) K. Roman,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the Desirability of Applying Commercial Accounting Principles to Municipal Reporting", Indiana Univ., 1979.

54) M. Gaffney, "Consolidated Versus Fund-by-Fund County Reports: the Perspectives of Constitutes", Maryland Univ., 1984.

55) J.M. Patton, op. cit., 1975.

「다니엘스」(J. Daniels)⁵⁶⁾는 시민, 투자자/채권자, 법률가/감독관 등 세 부류의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두 가지 양식으로 된 두 개의 유사한 규모의 코네티컷주의 일반목적 재무보고서를 제공하면서, ① 보고서에서 이행, 능력, 운영성과와 서비스원가 등 4가지 유형의 정보 제공의 유용성, ② 정보의 4가지 유형을 표현하고 있는 보고서의 적합성, ③ 적합성에 대한 의사결정에 가장 유용한 보고서의 부분 등과 함께 재무상태에 관하여 두 도시를 평가토록 하였다. 연구결과 통합 양식이 서비스원가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통합 양식이 전반적인 재정상태를 평가함에 있어 현저히 유용하다고 하였다.

한편 서정형⁵⁷⁾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상태와 운영결과 및 업적평가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회계모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새로운 회계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① 회계의 목적과 기준의 설정, ② 복식예산제도의 수립, ③ 기업회계방식의 점진적 도입, ④ 결합결산제도의 개선, ⑤ 회계정보 공시제도의 제도화를 기본 시각으로 하여 지방자치제 상황에 적합한 정보시스템 모형을 제시하고, 실제 대구광역시의 예산 및 재무보고를 새로운 모형에 따라 시뮬레이션하였다.

박옥순⁵⁸⁾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정보 공시제도에 대한 개선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존의 재무정보에 대한 이용실태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대한 각종 정보욕구를 조사·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① 재무정보 이용도는 매우 낮고 ② 재무정보 욕구수준은 매우 높으며 ③ 지방자치단체 재무정보 공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56) J.D. Daniels, "an Investigation of Municipal Financial Report Format, User Preference, and Decision Making", Boston Univ., 1988.

57) 서정형, op. cit., 1991.

58) 박옥순, op. cit., 1992.

권수영⁵⁹⁾은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법적체계와 관련법규 및 회계처리를 고찰하고, 법규의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회계원칙과 서울시의 회계현황을 분석하여 정부회계 처리원칙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정부회계기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회계 및 보고관련 논문들을 요약하면 <표 2-5>와 같다.

표 2-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 관심사항
Patton(1975)	회계자료의 유용성→일반인에게 유용, 보고서의 일관성
J. Michael(1975)	재무보고 양식의 관련 유용성
Coopers & Lybrand(1976)	지자체 공시실무→이용자는 재무상대, 서비스원가, 지분변화 및 재무자원의 흐름에 관심
Davison(1977)	지자체 보고서→영리기업과 동일한 형식, 언어, 개념사용
Ernst & Whinney(1978)	GAAP의 개선
Anthony(1978)	비영리보고서의 이용자식별, 욕구, 측정관심 등
Boyett & Giroux(1978)	지자체 채권관련 정보 중시→재무제표 재설계
Maschmeyer & Vandaniker(1979)	지자체 재무제표의 유용성→가장 유용성이 낮은 보고서가 B/S
Herzlinger & Sherman(1980)	기업회계→지자체회계, 예산정보 중시

59) 권수영, op. cit., 1995.

Copeland & Ingram(1983)	지자체 공시의 질
Gaffney(1984)	보고서 양식의 유용성
DeLuca(1988)	보고서 양식의 유용성
이윤재(1983)	지자체 재무조고서의 이용자 유형, 욕구 및 측정관심 등
서정형(1991)	재무상태, 운영결과 및 업적평가에 유용한 정보제공→새로운 회계시스템구축 필요
박옥순(1992)	재무정보의 이용실태 및 정보 욕구
권수영(1995)	정부회계기준 제정

지방자치단체 회계 및 보고관련 논문들은 부분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많은 부분에서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회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지방자치단체 회계정보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증분석이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설명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재무보고서 형식과 정보유형과의 관계, 그리고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영향이 미치는 지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제 3장 연구방법 및 가설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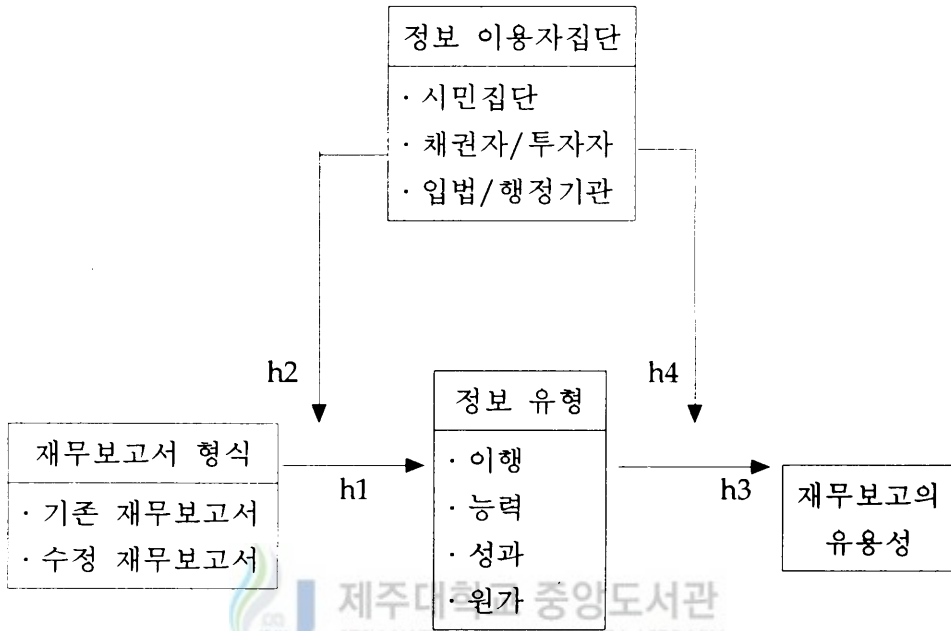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재무보고의 형식과 정보유형과의 관계 및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연구가설의 설정 및 가설검증을 위한 조사방법을 설명하였다.

제 1 절 연구모형과 변수정의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기존의 재무보고서가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집단의 의사결정에 유용한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특정 기초자치단체의 실제적인 보고서인 기존의 세입·세출 결산자료와 이를 근거로 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수지보고서를 작성·준비하였다. 이를 통하여 재무보고서 형식의 효과를 결정하고, 정보욕구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각 이용자집단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보이용자집단을 조절변수로 하여 재무보고서의 형식과 정보유형과의 관계 그리고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림 3-1>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3-1. 연구모형



2. 변수의 정의

(1) 이용자집단(user group)

1968년 NCGA(the National Council on Government Accounting, 정부 회계에 관한 국가위원회)는 정부보고서의 준비 및 이용자를 위한 안내서인 「정부회계, 감사 그리고 재무보고서(GAAFR)」를 발행하였다. 거기에서 이용자를 다음의 6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① 내부관리자, ② 입법부/감독기관, ③ 일반 대중, ④ 투자자와 채권자, ⑤ 다른 행정기관, ⑥ 공적인 이해자 집단

「앤서니」(R. Anthony)(1978)는 비영리재무보고서의 이용자 집단을 ① 관리실체, ② 투자자와 채권자, ③ 자원 제공자, ④ 감독실체, ⑤ 선거구민

으로 분류하면서 이용자 집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정보욕구 분석을 위한 근거로 사용하는 데는 애로점이 많다고 주장하였다.

정부회계기준위원회의 지원을 받은 「제임스」(James, 1985)는 정부재무보고서의 이용자 욕구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를 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재무보고서는 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주된 이용자 목록에서 내부관리자는 제외시켰고, 이용자 집단의 수는 적어야 한다는 「앤서니」의 견해에 동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용자 집단을 분류하였다. ① 시민 집단, ② 지방자치단체 투자자와 채권자, ③ 입법/행정 기관

이 세 집단은 주와 지방정부 재무보고서의 주된 이용자로 정부회계기준위원회에 의해 실질적으로 수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이들 세 집단을 이용자 집단으로 선정하여 이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연구대상자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대상은 시민집단, 투자자/채권자, 입법/행정기관으로 분류한 정부회계기준위원회의 분류방식을 이용하면서, 이를 세분화하였다.

(가) 시민집단은 연구기관, 언론기관 그리고 여론 선도층에 해당하는 제주 지역 유관기관 및 연구소의 구성원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① 연구기관 - 경영학 및 회계학 교수 등은 지방자치단체 회계 정보를 이용하여 회계 제도의 개선 및 회계 실무의 발전에 기여한다.

② 언론기관 -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여론을 주도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③ 지역 유관기관 및 연구소 - 언론기관과 함께 시민운동을 통하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여론을 주도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나) 투자자/채권자 집단은 제주은행을 포함하여 제주도내 소재의 시중은행 및 보험회사의 채권 및 여신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투자자와 채권자는 우리 나라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이루지므로 재무정보에 대한 이용도는 거의 없을 것이나 잠재적 투자자/채권자로서

중요한 정보이용자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대) 입법/행정기관은 제주도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제주도내 4개 시·군의의회 의원과 제주도 및 도내 4개 시·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① 지방의회 의원 - 이들은 외부 정보이용자 집단으로 입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예·결산 승인권을 행사하므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이용자 집단이라 할 수 있다.

② 공무원 - 이들은 내부의 정보이용자 집단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과 함께 장단기 정책 수립을 담당한다.

(2) 재무보고서

본 연구에 사용된 재무보고서는 특정 기초자치단체의 실제 보고서인 기존의 세입·세출 결산자료와 기존의 재무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수지보고서이다. 위 자치단체의 회계는 기금회계와 예산회계로 구분되는데, 기금회계는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된 6개의 기금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것이고, 예산회계는 해당 자치단체의 연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입·세출을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뉘어 진다.

일반회계는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 등 자치단체 고유의 활동에 관한 세입·세출을 관리하기 위한 회계이고, 특별회계는 해당 자치단체의 활동 중 특정 목적을 위한 활동과 관련된 세입·세출을 관리하기 위한 회계이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와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공영개발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발전소주변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되는 기타 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기존의 예·결산보고서를 수정한 수정재무보고서는 대차대조표와 수지보고서로 구분하여 준비하였다. 대차대조표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분하였다.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① 유동자산 중 미수금은 세입결산액의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분액을 직접 차감하여 순액으로 계상하였고, ②

고정자산 중 토지, 건물, 선박 등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종류별 현황의 합계액으로 실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감가상각액을 미계상하였으며, ③ 고정자산 중 비품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상 물품의 합계액으로 실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역시 감가상각액을 미계상하였고, ④ 유동부채 중 미지급금은 세출결산 총괄 중 지출원인액과 지출액의 차액으로 계상하였으며, ⑤ 유동부채 중 미지급이자 는 채무결산보고서의 종류별 채무현황 중 이자액을 계상하였고, ⑥ 고정부채의 지방채와 장기차입금은 채무결산보고서의 종류별 채무현황 중 원금액을 계상하였다. 그리고 대차대조표에서 자산과 부채의 차액은 순자산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수지보고서는 운영수입과 운영비용 및 이월금으로 구분하였다. 운영수입은 세입결산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① 지방세 수입 ② 경상적 이용자 수입 ③ 이전적 수입 ④ 차입 수입 ⑤ 기타 수입 ⑥ 특별수입으로 구분하였고, 운영비용은 세출결산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① 인건비 ② 경상관리비 ③ 이전경비 ④ 자본지출 ⑤ 용자 및 출자 ⑥ 보전재원 ⑦ 내부거래 ⑧ 예비비로 구분하였다. 이월금은 운영수익과 운영비용의 차액으로 당기순이익의 개념이 아니라 ① 명시이월금 ② 사고이월금 ③ 계속비이월금 ④ 보조금 사용잔액 ⑤ 순 잉여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명시이월금이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회계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금액이다. ② 사고이월금이란 회계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했을 때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하는 금액이다. ③ 계속비이월금이란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금액 중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당해 계속비 사업 완성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금액이다. ④ 보조금 사용잔액이란 국고 및 지방비 보조금 중 보조금 사업의 집행 결과 사용잔

액을 의미하며 회계년도 말까지 전액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⑤ 순 잉여금이란 세계잉여금으로 매 회계년도 세입 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을 의미한다. 여기서 계속비와 명시이월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⁶⁰⁾

표 3-1. 계속비와 명시이월의 차이

계속비	명시이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부터 이행에 수년이 요함. · 경비의 총액과 년할액이 미리 정해짐. · 경비자체에 특별한 제한 없음. · 이월사용 재원은 예정재원으로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년도 1년을 한도 · 필요한 금액임 · 경비에 요건이 있음 · 이월사용 재원은 반드시 현금이 있어야 함.

수지보고서의 구분은 현행의 예산편성지침의 비목을 그대로 사용하였는 바, 이를 그대로 계정과목으로 사용하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재무보고서는 제주도내 특정 기초자치단체의 실제 보고서인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이를 근거로 수정·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운영수지보고서이다. 이 두 종류의 재무보고서를 무작위로 배분하였는데, 이에 대한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배분 내용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3) 정보유형

GAAFR(Governmental Accounting, Auditing & Financial Reporting, 정부회계 감사와 재무보고)에서의 정부재무보고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투자자와 채권자에게 투자 및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② 조직의 지출과 서비스 배분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③ ㉠ 정부의 재무관리 효율성에 대한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환경적 유인의 존재와 ㉡ 감독 및 입법기관이 인정할 수 있는 정부의 조직적 성과와 효과적

60) 제주도, op. cit., p.54.

인 관리상의 수탁책임을 확실히 하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재무관련 법적, 계약적 규정의 이행 및 의사결정에 대한 그들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만족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쟁 시장의 징계권으로부터 정부가 벗어나는 것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NCGA,1980)

이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목적에서는 외부이용자들에게는 보고책임과 수탁책임을 입증하는데, 내부이용자에게는 의사결정 능력에 도움을 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에 의해 제작된 보고서에서 「앤서니」(R. Anthony, 1978)는 비영리재무제표는 ① 재무 능력(financial viability) ② 회계상의 이행(fiscal compliance) ③ 경영관리 성과(management performance) ④ 제공된 서비스 원가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다고 하였다. 재무 능력(financial viability)은 미래에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직의 능력을, 회계상의 이행(fiscal compliance)은 다음에 계속되는 지출 요구 및 법적인 강제력과 관련이 있으며, 관리 성과는 현명한 소비 지출을, 서비스 원가에 대한 보고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상세히 제공한다고 하였다.

또한, 「앤서니」(R. Anthony, 1980)는 비영리재무보고서의 이용자들은 조직에 의해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정보,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효과성, 이러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관심이 둔다고 하고 있다.

「존스」(Jones, 1985)는 정보의 사용과 사용자간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그에 따르면, 시민 집단은 (1) 효율 및 효과성 평가 (2) 금년도 결과와 전년도간의 비교 (3) 재무활동 및 상태 평가 (4) 예산 이행 결정 (5) 계획과 활동에 대한 변호 또는 주장 등 다양한 욕구를 갖는데 반해 입법부와 감독 관리들은 초점을 보다 좁게 갖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를 (1) 금년도의 결과를 전년도와 비교하거나 다른 정부단위

와의 비교를 통해서 관리부문 계획을 위한 기금조성과 지출에 대한 평가 (2) 예산과 다른 재무적 요구에의 이행 여부 결정 (3) 기금활동성 및 재무상태 감시에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와 채권자들은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부의 채무상환 능력을 결정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존스」 등의 결론을 요약하면, 정부회계기준위원회(1987)는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의 4가지 용도를 식별하고 있는데, (1) 예산과 실제 재무결과와의 비교 (2) 재무상태와 운영결과 평가 (3) 재무관련 법률, 규칙, 규정 이행 여부 결정 (4) 효율성과 효과성 평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앤서니」와 정부회계기준위원회가 제안한 것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 이용자들은 4가지 정보욕구를 갖는다고 보았다. 첫째, 그들은 재무관련 법률, 규칙, 규정 등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둘째, 이용자들 역시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와 미래 서비스의 계속성과 부채상환에 대한 기대를 포함하는 재무능력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 셋째, 이용자들은 관리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운영결과에 관한 정보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들은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 그러나 이것은 측정이 곤란하므로 서비스 원가에 대한 정보가 이를 대신하는 것으로 한다.

이용자들의 이러한 정보욕구는 이행(Compliance), 능력(viability), 성과(performance), 서비스원가(cost of services)라고 규정한다.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는 이러한 정보욕구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각 이용자 집단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4) 재무보고의 유용성

재무보고의 유용성은 의사결정 유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무보고서 형식이 정보이용자집단의 의사결정에 유용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7점 척도로 표현된 설문 중 이해 가능성, 수정의 필요도, 충분성의 응답점수를 산

슬평균하여 유용성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상의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 항목 및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2> 설문 항목 및 구성 내용

구분	변수	관련연구	설문문항
정보이용자집단	· 시민집단 · 채권자/투자자 · 입법/행정기관	James	3
정보유형	· 이행 · 능력 · 성과 · 원가	Anthony GASB	13, 19 14, 20 15, 21 16, 22
정보활용도	· 이용도 · 만족도	박옥순	9, 10, 12 11, 11-1
재무보고의 유용성	· 재무보고의 유용성	Boyett & Giroux, Davison	18, 23, 24
재무보고서의 형식	· 기존 재무보고서 · 수정 재무보고서	Daniels, Patton	

제 2 절 가설의 설정 및 조사방법

1. 가설의 설정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 형식별 정보제공목적에 대한 인지도와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기존 재무보고서와 수정 재무보고서간에는 정보의 4가지 유형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

가설 2 : 기존 재무보고서와 수정 재무보고서간에는 정보이용자 집단별 정보의 4가지 유형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

가설 3 : 정보의 4가지 유형에 따라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다.

가설 4 : 이용자 집단별로 정보의 4가지 유형에 따라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다.

2. 조사방법

본 연구는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설문지법을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재무보고서의 형식에 따라 2종류로 작성하였으며, 각 이용자 집단별 무작위로 1/2에게는 기존의 재무보고서를, 다른 1/2에게는 수정된 재무보고서를 설문지에 첨부하였다.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는 우편을 이용하는 방법과 기관을 방문하여 협조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자 집단은 ① 시민집단, ② 지자체 투자자 및 채권자, ③ 입법/행정기관으로 분류하였다.

시민집단은 연구기관, 언론기관 및 여론 선도층을 포함하였는데, 연구기관은 도내 소재 대학의 경영·회계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하였고, 언론기관은 도내 소재 양 방송사 및 3개 일간지와 주재 기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여론 선도층 등은 제주지역 유관기관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지자체 투자자 및 채권자는 도내 소재 금융기관 중 농협을 포함한 14개 은행과 14개 보험회사의 채권 및 여신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입법/행정기관은 제주도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4개 시·군 의회 의원과 제주도를 포함한 4개 시·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는데, 설문지 배포 및 회수는 <표 3-3>과 같다.

표 3-3. 설문지 배포 및 회수 현황

구분	발송	회수	회수율	구성비
시민집단	158	96	60.8%	38.9%
연구기관	30	16	53.3%	6.5%
언론기관	60	43	71.7%	17.4%
여론 선도층 등	68	37	54.4%	15.0%
투자자/채권자	84	39	46.4%	15.8%
입법/행정기관	208	112	52.9%	45.3%
의회의원	58	31	53.4%	12.6%
공무원	150	81	54.0%	32.8%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사용한 변수 중 정보 이용자집단과 재무보고서 유형은 명목척도이고, 정보유형과 정보활용도는 Likert의 7점 척도법을 이용하였다.

분석은 SPSSWIN(Ver. 7.5)을 이용하였으며, 사전연구단계인 예비분석과 본 단계분석으로 구분하였다. 예비분석은 기존 재무보고서의 이용빈도, 만족도 및 정보유형에 대한 선호도를 chi-square 분석과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본 연구단계에서는 재무보고서 형식별 정보제공 목적에 대한 인지도 분석은 T-test 분석을,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단순회귀분석(Sing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제 4 장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

본 장에서는 제1절은 예비분석단계로 재무보고서에 대한 인식도, 이용빈도, 만족도 및 정보유형별 선호도를 분석하였고, 제2절에서는 제3장에서 제시한 각 가설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여 해석하였다.

제1절 예비분석

1. 재무보고서에 대한 인식도

예상했던 것처럼, 이용자집단들은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표 4-1>과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입법/행정기관집단의 평균이 시민집단 및 채권자/투자자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른 두 집단과는 달리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내·외부 이용자로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시민집단 내에서는 언론기관이 연구기관 및 기타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채권자/투자자집단의 평균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 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투자 및 채권 관계가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1. 재무보고서에 대한 집단별 인지도

이용자 집단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시민집단	96	3.0938*	.7550
채권자/투자자	39	3.1538	.5866
입법/행정기관	112	2.3661	.7473
합 계	247	2.7733	.8148
분산분석	F값 : 32.174	유의수준 : .000	

* 1=매우 잘 알고 있다.

4=전혀 모른다

표 4-2. 재무보고서에 대한 이용자별 인지도

이용자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의회의원	31	2.1290	.6187
금융기관	39	3.1538	.5866
언론기관	43	2.8837	.7931
연구기관	16	3.2500	.7746
공무원	81	2.4568	.7754
기 타	37	3.2703	.6519
합 계	247	2.7733	.8148
분산분석	F값:15.599	유의수준 : .000	

2. 재무보고서의 이용도

재무보고서의 이용빈도에 대하여 ①항상 이용한다. ②자주 이용한다. ③가끔 이용한다. ④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⑤있는지조차 모른다.의 5점 척도법을 이용하였으며,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3>과 같다.

표 4-3. 재무보고서의 이용빈도

변수		빈도수	평균	F값	F 유의도
종속변수	독립변수				
이용도	시민집단	96	3.7500	29.442	.000***
	채권자/투자자	39	3.9487		
	입법/행정기관	112	3.0000		
	합 계	247	3.4413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용 빈도가 높은 집단은 예측했던 것 처럼 입법/

행정기관집단이며, 가장 낮은 집단은 채권자/투자자집단이다.

1) 재무보고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재무보고서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집단과 모른다고 답한 집단을 대상으로 재무보고서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은 ①재무정보를 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 경우 ②관계기관이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인 경우 ③구해 볼 필요를 느끼지 않고 또한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경우 ④기타의 경우로 나누었다. 조사 결과는 <표 4-4>와 같다.

<표 4-4>에 따르면 재무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정보에 관심이 없거나 구해 볼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전체의 72.9%)이고, 구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는 11.3%, 그리고 관계기관이 제공해 주지 않는다는 경우는 12%, 기타의 경우도 3.8%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집단 및 채권자/투자자집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 무관심하게 된 것이라 여겨진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가 널리 유포된다면 이용자 집단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재무보고서의 이용 및 정보 욕구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표 4.4. 재무보고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이용자 집단	구하는 방법 모름	관계기관 거부	무관심	기타	전체
시민집단	9	8	44	2	63
채권자/투자자	3	5	23	1	32
입법/행정기관	3	3	30	2	38
합 계	15	16	97	5	133

2) 재무보고서의 유용성 여부

재무보고서의 이용실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가 일반 시민에게 유용한 지를 알아보았다. 응답은 ①매우 유용하다. ②유용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유용하지 못하다. ⑤전혀 유용하지 못하다. 5점 척도법을 이용하였다. chi-square 분석결과는 <표 4-5>와 같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실제 이용 빈도와는 달리 모든 이용자 집단이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는 일반 시민에게 유용하다고 답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용도가 높은 입법/행정기관보다는 채권자/투자자와 시민집단이 일반적인 유용성 면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재무정보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접할 기회가 적어서 관심이 적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재무보고 공시의 제도화가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표 4-5. 재무보고서의 일반적 유용성

빈도수 행 백분율 열 백분율	재무보고서 유용성					전체
	매우유용	유용하다	그저 그렇다	유용 못함	아주 유용못함	
시민집단	11	45	29	11	0	96
	11.5	46.9	30.2	11.5	0.0	100.0
	52.4	45.0	32.2	33.3	0.0	38.9
채권자/투자자	7	15	15	2	0	39
	17.9	38.5	38.5	5.1	0.0	100.0
	33.3	15.0	16.7	6.1	0.0	15.8
입법/행정기관	3	40	46	20	3	112
	2.7	35.7	41.1	17.9	2.7	100.0
	14.3	40.0	18.6	60.6	100.0	45.3
합 계	21	100	90	33	3	247
	8.5	40.5	36.4	13.4	1.2	100.0
chi-square	20.461	df	8	prob	0.009**	

3) 재무정보 원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식적인 재무정보원은 ①예산서 ②결산서 ③지방 재정연감 ④관보 등이 있으며, 그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을 이용하기도 하나 다양한 정보매체가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게시판을 이용한 고시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전달방법이라 생각되어 이를 재무정보원에서 제외하였다.

<표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무정보 원천으로는 예산서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집단별로는 입법/행정기관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역시 내부 이용자 집단이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외부 이용자 집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재무정보 원천

구분	무경협		재무정보원										전체	
	빈도	구성비	예산서		결산서		지방재정연감		관보		기타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빈도	구성비		
시민집단	64	25.9	17	6.9	8	3.2	4	1.6	1	.4	2	.8	96	38.9
채권자/투자자	15	6.1	14	5.7	6	2.4	3	1.2	1	.4			39	15.8
입법/행정기관	29	11.7	41	16.6	35	14.2	4	1.6	1	.4	2	.8	112	45.3
합계	108	43.7	72	29.1	49	19.8	11	4.5	3	1.2	4	1.6	247	100

3. 재무보고서에 대한 만족도

기존의 재무보고서에 대한 만족도는 ①아주 만족한다. ②충분하다. ③보통이다. ④불충분하다. ⑤매우 불충분하다. 의 5점 척도법을 이용하였으

며,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7>과 같다.

표 4-7. 재무정보의 만족도

변수		빈도수	평균	F값	F 유의도
종속변수	독립변수				
만족도	시민집단	96	3.6354	23.259	.000***
	채권자/투자자	39	3.7692		
	입법/행정기관	112	3.0982		
	합 계	247	3.4130		

분석 결과, 입법/행정기관이 만족도가 가장 높고 이어 시민집단, 투자자/채권자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용도가 높은 집단이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재무정보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 집단은 기존의 정보의 틀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재무정보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기존의 재무보고서가 불충분하다고 답한 집단과 아주 부족하다고 답한 집단을 대상으로 재무보고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①사용하는 용어를 이해하기 어렵다. ②보고서의 분량이 너무 방대하다. ③구체적이지 못하다. ④조직별 활동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⑤기타의 경우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표 4-8>과 같다.

표 4-8. 재무정보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이용자 집단	용어의 어려움	분량 방대	구체적이지 못함	조직별 활동 내용 부족	기타	전체
시민집단	17	0	25	9	4	55
채권자/투자자	7	8	10	3	0	28
입법/행정기관	2	2	12	7	2	25
합 계	26	10	47	19	6	108

<표 4-8>에 따르면 재무정보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주류(전체의 43.5%)이고, 사용 용어가 어렵다고 하는 경우는 24.1%, 조직별 활동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는 경우 17.6%, 그리고 분량이 방대하다고 하는 경우 9.3%로 나타났으며, 기타의 경우도 3.8%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 집단 및 채권자/투자자집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재무보고서 자체가 단순한 기록에 불과해 구체적이지 못하고, 또한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행정용어를 원용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의 기장 방식을 대차평균의 원리가 적용되는 복식부기 방식을 사용하고, 기업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원용하여 사용한다면 이용자 집단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재무보고서의 이용 및 정보 욕구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4. 정보의 유형에 대한 인식

이용자 집단별로 정보 유형별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용자 집단에 게 정보의 4가지 유형 즉, 이행(fiscal compliance), 능력(financial viability), 성과(management performance), 서비스 원가(cost of service)를 유용성 개념에 의해 순위를 매기도록 하여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표 4-9>와 같다.

표 4-9. 정보 유형별 선호도

	시민집단				투자자/채권자				입법/행정기관			
	1위	2위	3위	4위	1위	2위	3위	4위	1위	2위	3위	4위
이행	15	22	22	37	8	5	7	19	20	24	28	40
능력	26	25	33	12	10	12	13	4	47	23	33	9
성과	45	31	13	7	18	15	2	4	34	47	23	8
서비스원가	10	18	28	40	3	7	17	12	11	18	28	55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민집단과 채권자/투자자집단은 성과, 능력, 이행, 서비스 원가 순으로 유용성이 높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성과와 재무능력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법/행정기관은 능력, 성과, 이행, 서비스 원가 순으로 유용성이 높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능력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해자집단 모두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불능력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에서 4가지 유형의 정보를 적절히 제공해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4가지 질문을 각 정보 유형별로 제기하고, ①매우 충분하다. ⑦전혀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는 7점 척도법을 이용하였다. 집단별 평균 분석 결과는 <표 4-10>과 같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입법/행정기관만이 4가지 모든 정보 유형에 대해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하는 반면 시민집단과 채권자/투자자집단은 모든 정보 유형에 대해 적절히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0. 정보 유형별 평균 분석

		시민집단	채권자/투자자	입법/행정기관	합 계
빈도수		96	39	112	247
이행	평균	5.1667	4.8718	3.9107	4.5506
	표준편차	1.3508	1.2603	1.5160	1.5290
능력	평균	5.3333	5.0769	4.0982	4.7328
	표준편차	1.4117	1.1784	1.4455	1.5066
성과	평균	5.3542	5.0769	4.1429	4.7611
	표준편차	1.2647	1.1329	1.4999	1.4691
원가	평균	5.5938	5.4359	4.3839	5.0202
	표준편차	1.2614	1.1424	1.3966	1.4269

제2절 가설검증 및 해석



1. 재무보고서 형식별 정보제공 목적에 대한 인지도

가설 1. 기존 재무보고서와 수정 재무보고서간에는 정보의 4가지 유형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

이 가설은 기존의 재무보고서와 수정된 재무보고서간에 4가지 정보 유형을 충분히 제공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결과는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재무보고서와 수정된 재무보고서간에 4가지 정보 유형-이행관련 정보, 재무능력관련 정보, 운영성과관련 정보 및 서비스원가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인식정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설 1을 $P < .05$ 의 유의수준에서 검정한 결과는 <표 4-11>과 같다. 정보이용자의 정보유형별 인식 정도에 있어 재무능력관련 정보, 운영성과관련 정보 및 서비스원가관련 정보는 B/S등을 이용하는 수정 재무보고서가 기존의 재무보고서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고, 반면 이행관련 정보는 수정 재무보고서보다 오히려 기존의 재무보고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1. 정보유형별 인식정도에 대한 두 재무보고서간의 차이 비교

변수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수준
종속변수	독립변수					
이행정보	수정 보고서	130	4.6538	1.0321	3.934	.000***
	기존 보고서	117	4.0598	1.3345		
능력정보	수정 보고서	130	3.8231	1.0888	-5.464	.000***
	기존 보고서	117	4.6923	1.4048		
성과정보	수정 보고서	130	3.9385	1.1395	-6.029	.000***
	기존 보고서	117	4.8632	1.2588		
원가정보	수정 보고서	130	4.1231	1.3469	-5.704	.000***
	기존 보고서	117	5.1026	1.3480		

표 4-12. 정보유형별 인식정도에 대한 두 재무보고서간의 차이 비교 - 경험자집단

변수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수준
종속변수	독립변수					
이행정보	수정 보고서	61	4.6557	1.0784	3.614	.000***
	기존 보고서	53	3.8491	1.2770		
능력정보	수정 보고서	61	3.7869	1.1272	-4.581	.000***
	기존 보고서	53	4.8679	1.3593		
성과정보	수정 보고서	61	3.8361	1.1281	-5.638	.000***
	기존 보고서	53	5.0755	1.2065		
원가정보	수정 보고서	61	4.0492	1.4540	-4.571	.000***
	기존 보고서	53	5.2264	1.2956		

실제 재무보고서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을 추가하였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4가지 정보 유형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2 참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재무보고서는 이행관련 정보는 충분히 제공해주고 있으나, 능력·성과·서비스원가관련 정보는 수정재무보고서에 비해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재무보고서 형식에 있어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설2. 기존 재무보고서와 수정 재무보고서간에는 정보이용자집단별 정보의 4가지 유형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

이 가설은 기존의 재무보고서와 수정된 재무보고서간에 이용자 집단별로 4가지 정보 유형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결과는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재무보고서와 수정된 재무보고서간에 4가지 정보 유형-이행관련 정보, 재무능력관련 정보, 운영성과관련 정보 및 서비스원가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이용자 집단별-시민집단, 투자자/채권자, 입법/행정기관- 인식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설 2를 $P < .05$ 의 유의수준에서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민집단의 경우, 정보유형별 인식 정도에 있어 재무능력관련 정보, 운영성과관련 정보 및 서비스원가관련 정보는 B/S등을 이용하는 수정 재무보고서가 기존의 재무보고서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고 반면 이행관련 정보는 기존의 보고서가 높게 나타났다.(표 4-13 참조)

실제 재무보고서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을 추가하였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4가지 정보 유형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4-14 참조)

표 4-13. 정보유형별 인식정도에 대한 두 보고서간의 차이-시민집단

변수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수준
종속변수	독립변수					
이행정보	수정 보고서	44	5.0652	.9499	2.704	.008**
	기존 보고서	52	4.4231	1.3187		
능력정보	수정 보고서	44	3.8864	.8948	-4.355	.000***
	기존 보고서	52	4.9038	1.3757		
성과정보	수정 보고서	44	3.9545	.9389	-5.388	.000***
	기존 보고서	52	5.1346	1.2050		
원가정보	수정 보고서	44	4.0227	1.3205	-4.959	.000***
	기존 보고서	52	5.3462	1.28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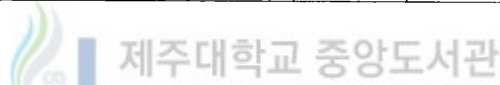


표 4-14. 정보유형별 인식정도에 대한 두 보고서간의 차이
- 시민집단(경험자집단)

변수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수준
종속변수	독립변수					
이행정보	수정 보고서	15	5.2000	1.0823	2.663	.013*
	기존 보고서	16	4.0000	1.4142		
능력정보	수정 보고서	15	3.6000	.9856	-2.512	.018*
	기존 보고서	16	4.6875	1.4009		
성과정보	수정 보고서	15	3.9333	.8837	-3.493	.002**
	기존 보고서	16	5.1875	1.1087		
원가정보	수정 보고서	15	3.8667	1.4075	-3.263	.003**
	기존 보고서	16	5.3125	1.0145		

이는 시민집단에게 있어서는 재무능력, 운영성과 및 서비스원가관련 정보는 B/S등을 이용하는 수정 보고서가 더 유용하며, 이행관련 정보를 인식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보고서가 더 유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채권자/투자자집단의 경우, 정보의 유형별 인식 정도에 있어 시민집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무능력관련 정보, 운영성과관련 정보 및 서비스원가관련 정보는 B/S등을 이용하는 수정 재무보고서가 기존의 재무보고서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행관련 정보는 기존의 재무보고서가 높게 나타났다.(표 4-15 참조)

실제 재무보고서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을 추가하였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4가지 정보 유형 모두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표 4-16 참조)

이는 채권자/투자자집단에게 있어서 재무능력, 운영성과 및 서비스원가관련 정보는 수정 재무보고서가 기존의 재무보고서보다 더 유용하고, 이행관련 정보는 오히려 수정 재무보고서가 기존의 재무보고서보다 더 유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5. 정보유형별 인식정도에 대한 두 보고서간의 차이-투자자/채권자

변수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수준
종속변수	독립변수					
이행정보	수정 보고서	22	4.7273	.7673	3.290	.002**
	기존 보고서	17	3.6471	1.2719		
능력정보	수정 보고서	22	3.5000	1.1019	-3.114	.004**
	기존 보고서	17	4.6471	1.1695		
성과정보	수정 보고서	22	3.5909	1.1406	-3.081	.004**
	기존 보고서	17	4.7059	1.1048		
원가정보	수정 보고서	22	3.8182	1.0065	-2.876	.008**
	기존 보고서	17	4.9412	1.3449		

표 4-16. 정보유형별 인식정도에 대한 두 보고서간의 차이 비교
- 투자자/채권자(경험자집단)

변수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수준
종속변수	독립변수					
이행정보	수정 보고서	5	5.0000	.7071	9.487	.001**
	기존 보고서	2	2.0000	.0000		
능력정보	수정 보고서	5	2.8000	1.3038	-4.817	.010*
	기존 보고서	2	6.5000	.7071		
성과정보	수정 보고서	5	2.8000	1.3038	-4.817	.010*
	기존 보고서	2	6.5000	.7071		
원가정보	수정 보고서	5	3.2000	1.3038	-6.517	.003**
	기존 보고서	2	7.0000	.0000		

입법/행정기관집단의 경우, 정보의 유형별 인식 정도에 있어 다른 두 집단과 마찬가지로 재무능력관련 정보, 운영성과관련 정보 및 서비스원가관련 정보는 B/S등을 이용하는 수정 재무보고서가 기존의 재무보고서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행관련 정보는 기존의 재무보고서가 높게 나타났다.(표 4-17 참조) 이는 입법/행정기관집단 역시 재무능력, 운영성과 및 서비스원가관련 정보는 수정 재무보고서가 기존의 재무보고서보다 더 유용하고, 이행관련 정보는 오히려 수정 재무보고서가 기존의 재무보고서보다 더 유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재무보고서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을 추가하였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4가지 정보 유형 모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4-18 참조)

이는 입법/행정기관에서도 재무능력, 운영성과 및 서비스원가관련 정보는 수정 재무보고서가 기존의 재무보고서보다 더 유용하고, 이행관련 정보는 오히려 수정 재무보고서가 기존의 재무보고서보다 더 유용함을 보여주

고 있다.

표 4-17. 정보유형별 인식정도에 대한 두 보고서간의 차이 비교
- 입법/행정기관

변수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수준
종속변수	독립변수					
이행정보	수정 보고서	64	4.3438	1.0723	2.305	0.023*
	기존 보고서	48	3.8125	1.2990		
능력정보	수정 보고서	64	3.8906	1.1968	-2.235	0.028*
	기존 보고서	48	4.4792	1.5016		
성과정보	수정 보고서	64	4.0469	1.2527	-2.333	0.022*
	기존 보고서	48	4.6250	1.3309		
원가정보	수정 보고서	64	4.2969	1.4549	-2.201	0.030*
	기존 보고서	48	4.8958	1.1027		

표 4-18. 정보유형별 인식정도에 대한 두 보고서간의 차이 비교
- 입법/행정기관(경험자집단)

변수		빈도수	평균	표준편차	T-값	유의수준
종속변수	독립변수					
이행정보	수정 보고서	41	4.4146	1.0482	2.047	0.042*
	기존 보고서	35	3.8857	1.1825		
능력정보	수정 보고서	41	3.9756	1.1065	-3.107	0.003**
	기존 보고서	35	4.8571	1.3316		
성과정보	수정 보고서	41	3.9268	1.1487	-3.691	0.000***
	기존 보고서	35	4.9429	1.2353		
원가정보	수정 보고서	41	4.2195	1.4750	-2.642	0.010*
	기존 보고서	35	5.0857	1.3799		

2.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가설 3 : 정보의 4가지 유형에 따라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다.

이 가설은 정보의 4가지 유형 즉, 이행관련 정보, 재무능력관련 정보, 운영성과관련 정보, 서비스원가관련 정보를 독립변수로 하고, 재무보고 유용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선형회귀분석을 하였다.

정보 유형과 재무보고의 유용성과의 관계는 <표 4-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립변수가 투입됨으로서 종속변수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은 35.7%로 나타나고 있으며, 회귀식 유의수준도 .000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행관련 정보, 능력관련 정보 및 성과관련 정보는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나, 서비스원가관련 정보는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4-19.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Beta	T 값	유의도
재무보고의 유용성	이행정보	.159	.037	.225	4.256	.000***
	능력정보	.172	.057	.264	3.028	.003**
	성과정보	.159	.063	.237	2.545	.012*
	원가정보	3.079E-02	.041	.051	.749	.455
F값 : 33.614		R ² : .357		유의도 : .000***		

정보 유형과 재무보고의 유용성과의 관계를 기존 재무보고서와 수정 보고서로 구분하여 추가로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는 <표 4-20> 및 <표 4-21>과 같다.

표 4-20.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기존 재무보고서

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Beta	T 값	유의도
재무보고의 유용성	이행정보	.197	.060	.257	3.275	.001**
	능력정보	.124	.079	.171	1.575	.118
	성과정보	.133	.076	.191	1.749	.083
	원가정보	9.127E-02	.051	.155	1.782	.077
F값 : 16.447 R ² : .345 유의도 : .000***						

표 4-21.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수정 재무보고서

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Beta	T 값	유의도
재무보고의 유용성	이행정보	.153	.055	.224	2.772	.007**
	능력정보	.181	.086	.280	2.098	.038*
	성과정보	.227	.110	.314	2.071	.041*
	원가정보	-8.193E-02	.072	-.121	-1.140	.257
F값 : 15.592 R ² : .358 유의도 : .000***						

기존 재무보고서에서의 정보유형과 재무보고의 유용성과의 관계는 <표 4-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명력 34.5%로 나타나고 있으며, 회귀식 유의수준도 .000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내포하고 있으나, 4가지 정보유형 중 이행정보만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정 재무보고서에서의 정보유형과 재무보고의 유용성과의 관계는 <표 4-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명력 35.8%로 나타나고 있으며, 회귀식 유의수준도 .000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내포하고 있으며, 4가지 정보유형 중 이행관련 정보, 재무능력관련 정보 및 운영성과관련 정보는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원가관련 정보는 통계적 의미는

없으나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부정적 영향변수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가설 4 : 이용자 집단별로 정보의 4가지 유형에 따라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다.

이 가설은 정보의 4가지 유형 즉, 이행관련 정보, 재무능력관련 정보, 운영성과관련 정보, 서비스원가관련 정보를 독립변수로 하고, 재무보고의 유용성을 종속변수로 하면서 정보이용자집단을 조절변수(moderating variables)로 하여 선형회귀분석을 하였다.

시민집단에게서의 정보유형과 재무보고의 유용성과의 관계는 <표 4-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명력 36.8%로 나타나고 있으며, 회귀식 유의수준도 .000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시민집단의 경우 4가지 정보유형 중 재무능력관련 정보만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시민집단은 그들이 재무보고서를 활용함에 있어 재무능력 관련 정보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시민집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이행능력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22.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시민집단

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Beta	T 값	유의도
재무보고의 유용성	이행정보	.108	.058	.160	1.845	.068
	능력정보	.205	.081	.324	2.530	.013*
	성과정보	.141	.088	.216	1.602	.113
	원가정보	3.766E-02	.062	.068	.606	.546
F값 : 13.240		R ² : .368		유의도 : .000***		

채권자/투자자집단에게서의 정보유형과 재무보고의 유용성과의 관계는

<표 4-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명력 35.8%로 나타나고 있으며, 회귀식 유의수준도 .004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채권자/투자자집단의 경우 4가지 정보유형 중 어느 것도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이는 채권자/투자자집단이 비자발적인 채권자 및 투자자 입장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4-23.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채권자/투자자

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Beta	T 값	유의도
재무보고의 유용성	이행정보	.141	.089	.231	1.587	.122
	능력정보	8.846E-02	.133	.160	.664	.511
	성과정보	.132	.135	.237	.977	.335
	원가정보	.174	.099	.321	1.770	.086
F값 : 4.748 R ² : .358 유의도 : .004**						

입법/행정기관집단에게서의 정보유형과 재무보고의 유용성과의 관계는 <표 4-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명력 36.4%로 나타나고 있으며, 회귀식 유의수준도 .000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 입법/행정기관집단의 경우 4가지 정보유형 중 이행관련 정보만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입법/행정기관집단은 그들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이행관련 정보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입법/행정기관집단은 중요한 내부이용자로서 수탁관리 책임에 관심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원가관련 정보는 통계적 의미는 없으나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부정적 영향변수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표 4-24.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입법/행정기관

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Beta	T 값	유의도
재무보고의 유용성	이행정보	.235	.065	.296	3.586	.001**
	능력정보	.147	.100	.211	1.472	.144
	성과정보	.213	.112	.294	1.893	.061
	원가정보	3.244E-02	.068	-.050	-.479	.633
F값 : 15.330 R ² : .364 유의도 : .000***						

추가로 재무보고서의 형식별로 이 가설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민집단의 경우 <표 4-25>와 <표4-26>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 재무보고서에서는 정보의 4가지 유형 모두가 통계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정재무보고서에서는 능력관련 정보와 성과관련 정보가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가관련 정보는 통계적 의미는 없으나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부정적 영향변수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표 4-25. 기존 재무보고서의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시민집단

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Beta	T 값	유의도
재무보고의 유용성	이행정보	.218	.114	.278	1.919	.062
	능력정보	.148	.149	.178	.992	.327
	성과정보	-1.593E-03	.139	-.002	-.011	.991
	원가정보	.153	.087	.271	1.759	.086
F값 : 3.749 R ² : .278 유의도 : .011*						

표 4-26. 수정 재무보고서의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시민집단

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Beta	T 값	유의도
재무보고의 유용성	이행정보	3.277E-02	.076	.052	.429	.670
	능력정보	.236	.096	.392	2.452	.018*
	성과정보	.368	.122	.535	3.016	.004**
	원가정보	-.201	.096	-.311	.041	.670
F값 : 11.768 R ² : .500 유의도 : .000***						

채권자/투자자집단의 경우 <표 4-27>와 <표4-28>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 재무보고서에서는 정보의 4가지 유형 모두가 통계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정재무보고서에서는 이행관련 정보와 능력관련 정보가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과관련 정보는 통계적 의미는 없으나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부정적 영향변수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표 4-27. 기존 재무보고서의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채권자/투자자

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Beta	T 값	유의도
재무보고의 유용성	이행정보	8.738E-02	.182	.102	.479	.638
	능력정보	-9.855E-02	.190	-.165	-.518	.611
	성과정보	.249	.171	.430	1.454	.164
	원가정보	.207	.153	.317	1.357	.193
F값 : 1.411 R ² : .249 유의도 : .273						

표 4-28. 수정 재무보고서의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채권자/투자자

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Beta	T 값	유의도
재무보고의 유용성	이행정보	.266	.102	.501	2.604	.023*
	능력정보	.459	.202	.794	2.271	.042*
	성과정보	-.352	.280	-.575	-1.257	.233
	원가정보	.279	.157	.554	1.778	.101
F값 : 4.236		R ² : .585		유의도 : .023*		

입법/행정기관집단의 경우 <표 4-29>와 <표4-30>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 재무보고서, 수정 재무보고서 모두에서 이행관련 정보만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재무보고서에서는 능력관련 정보가, 수정재무보고서에서는 성과관련 정보가 통계적 의미는 없으나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부정적 영향변수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표 4-29 기존 재무보고서의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입법/행정기관

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Beta	T 값	유의도
재무보고의 유용성	이행정보	.259	.096	.320	2.710	.009**
	능력정보	.144	.114	.199	1.264	.211
	성과정보	.204	.116	.294	1.756	.084
	원가정보	-1.574E-02	.078	-.026	-.201	.841
F값 : 11.917		R ² : .447		유의도 : .000***		

표 4-30. 수정 재무보고서의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입법/행정기관

종속변수	독립변수	회귀계수	표준오차	Beta	T 값	유의도
재무보고의 유용성	이행정보	.236	.112	.291	2.116	.011*
	능력정보	.142	.207	.202	.686	.496
	성과정보	.218	.253	.276	.862	.393
	원가정보	-7.737E-02	.129	-.103	-.599	.552
F값 : 4.401		R ² : .290		유의도 : .005**		

이를 요약해 보면, 시민집단의 경우 기존 재무보고서에서는 정보의 4가지 유형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정 재무보고서에서는 능력·성과관련 정보는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채권자/투자자집단의 경우에는 기존 재무보고서에서는 정보의 4가지 유형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정 재무보고서에서는 이행·재무능력관련 정보는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법/행정기관집단의 경우에는 기존과 수정재무보고서 모두에서 이행관련 정보만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5 장 결 론

본 장에서는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이러한 연구결과가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상의 재무보고제도와 관련하여 시사해주는 의미를 검토한다. 아울러 본 논문의 한계와 미래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를 분석·평가하고, 이해관계자의 정보요구를 규명하여 새로운 회계환경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유용한 재무보고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론적 연구와 실증연구를 하였다.

현행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와 지방정부 회계제도가 발달한 미국과의 비교를 통해 문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의 예산회계를 중심으로 하는 단식부기시스템으로는 지방정부의 보고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회계환경에 적합한 복식부기시스템을 갖춘 정부회계기준 제정이 시급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제도는 정보이용자의 정보요구를 반영하는 공시제도의 확립을 위해 일반목적 재무보고서 형식 및 공시방법의 개선, 회계내용에서는 복식부기시스템 및 발생주의(수정발생주의)에 의한 수익 비용의 인식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재무보고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증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정보이용자집단, 정보유형, 재무보고서 형식 등의 3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기존의 재무보고서와 수정 재무보고서간 정보제공 능력과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초점을 두었다. 이용자집단은 세 부류의 이용자집단 즉, 시민집단, 채권자/투자자집단, 입법/행정기관

집단으로 분류하고, 정보의 유형은 이행(fiscal compliance), 능력(financial viability), 성과(management performance), 원가(cost of service)관련 정보로 분류하였으며, 재무보고서는 제주도내 특정 기초자치단체의 실제 보고서로 기존의 재무보고서인 세입결산 총괄표, 세출결산 총괄표 및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처리상황과 동 자치단체의 결산서를 이용하여 작성한 수정 재무보고서인 대차대조표, 수지보고서를 이용하였다.

예비분석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존의 재무보고서에 대한 이용도 및 만족도 등을 조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재무보고서의 이용빈도는 대단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빈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53.8%가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재무보고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정보에 관심이 없거나 구해 볼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72.9%)이었다. 그러나 이용빈도와는 달리 재무보고서가 일반인들에게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전체의 85.4%가 유용하다고 하였다. 이용자집단 중 입법/행정기관집단은 시민집단과 투자자/채권자집단에 비해 이용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관심을 끄는 점은 이용도가 높은 입법/행정기관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이용도가 낮은 시민집단과 투자자/채권자집단이 재무보고서가 일반인들에게 매우 유용하다고 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보고서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접할 기회가 적어서 관심이 부족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재무보고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기존의 재무보고서에 대한 만족도는 입법/행정기관집단(77.7%), 시민집단(42.7%), 투자자/채권자집단(28.2%) 순으로, 입법/행정기관집단을 제외하고는 대단히 불충분하다고 하였으며, 기존의 재무보고서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또한 사용용어가 어렵다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집단 및 투자자/채권자집단은 지방자치단체

의 재무보고서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무 보고서 자체가 단순한 기록에 불과해 구체적이지 못하고, 또한 사용언어가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 생각되어 진다. 따라서 정보이용 자집단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단순 나열식으로 기록하는 단식부기방법에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업적평가 및 채권·채무의 종합적 관리가 가능하며, 계정과목간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복식부기방법으로 변경하고 또한 재무보고의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면 이용자집단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재무보고서의 이용 및 만족도가 높아지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정보이용자 집단별로 4가지 정보유형을 서열화하도록 한 결과 시민집단과 채권자/투자자집단인 경우 가장 유용한 정보유형은 성과→능력→이행→원가관련 정보 순으로 나타났고, 입법/행정기관집단은 능력→성과→이행→원가관련 정보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네가지 연구가설을 검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보고서의 형식별 정보제공 목적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가설 1, 2), 정보이용자집단 모두에게서 4가지 유형의 정보를 인식함에 있어 재무능력, 운영성과, 서비스원가관련 정보는 예·결산서보다는 대차대조표와 수지보고서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더 유용하나, 예산 및 법적인 강제력과 관련되는 이행관련 정보는 대차대조표와 수지보고서 보다는 예·결산서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더 유용하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예·결산보고서로는 정보이용자집단의 정보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기업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무제표처럼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에 적합한 재무제표를 고안하여 이를 이용한 재무보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고책임과 수탁관리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무보고서 및 공시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예·

결산서 대신에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에 적합한 재무제표를 작성·사용토록 하고 이를 web망을 이용하여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투명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해서 재무보고의 유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가설 3, 4), 이행·능력·성과관련 정보는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재무보고서에서는 이행관련 정보만이, 수정 재무보고서에서는 이행·능력·성과관련 정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집단별로 살펴보면, 시민집단의 경우 기존의 재무보고서에서는 4가지 정보유형 모두가 통계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정 재무보고서에서는 능력·성과관련 정보가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투자자/채권자집단의 경우 기존의 재무보고서에서는 4가지 정보유형 모두가 통계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정 재무보고서에서는 이행·능력관련 정보가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법/행정기관집단의 경우에는 기존과 수정 재무보고서 모두에서 이행관련 정보만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집단은 능력·성과관련 정보를, 채권자/투자자집단은 이행·능력관련 정보를, 그리고 입법/행정기관집단은 이행관련 정보를 중시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사전연구 단계의 결과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유형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재무제표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와 미래의 연구방향

본 연구는 정보이용자집단을 조절변수로 하여 재무보고서 형식과 정보유형, 그리고 정보유형이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지를 이용

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재무보고서의 형식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으므로 수정 보고서의 형식상의 문제로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 외 본 연구의 가정 및 기타 한계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의 외적 타당성문제로,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무정보의 외부이용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재무보고의 유용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고서 양식을 단순화하기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하여 단일 기초단체의 일반회계만을 연구범위로 한정하였다.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를 포함하고 상호 비교가능한 비슷한 규모의 2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한 연구영역이 될 것이다.

셋째, 수정 재무보고서를 작성 준비하면서 보고서 양식을 단순화하기 위해 현행의 예·결산보고서의 내용에 충실하기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예산비목을 그대로 사용하여 연구를 하였는데, 보고서 양식을 발생 또는 수정발생주의에 입각하여 작성 준비하여 분석하는 것도 미래의 연구과제라 여겨진다.

끝으로, 측정문제와 함께 4가지 정보유형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 예산과 회계를 연계시키는 예산회계정보시스템에 대한 연구 또한 매우 중요한 연구영역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지방자치법 및 동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예산회계법 및 동 시행령
- 강원순, “정부회계의 복식회계제도 도입방안1”, 월간공인회계사(3월호), 1999.
- 권수영, 김선구, “정부부문에서의 발생주의회계/복식부기제도 도입 및 추진방안”, 회계저널 제8권 제1호, 한국회계학회, 1999.
- 권수영, “우리나라 정부회계기준의 정립을 위한 고찰”, 회계저널 제3호, 1995.
- 권찬태, 안홍복,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회계의 구조적 특징과 개선방안”, 경북대 경제경영연구소 경상논집, 제22권 제2,3호, 1994.
- 권찬태, 이중희, “지방자치회계제도의 한·미·일 비교연구”, 회계저널 제3호, 1995.
- 남상오, 회계원리, 다산출판사, 1992
- 박옥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정보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대학원, 1992
- 박해근, “지방정부 회계제도의 한·미간 비교연구”, 계명대 산업경영연구소 경영경제 제29집 2호, 1996.
- 서정형,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정보시스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대대학원, 1991
- 서효원, “정부회계의 복식회계제도 도입방안2”, 월간공인회계사(3월호), 1999.
- 윤성식·권수영, 정부회계, 법문사, 1999
- , “지방자치회계제도의 한·미·일 비교연구 토론”, 회계저널 제3호, 1995.

- _____, 정부회계-예산 원가회계 및 감사-, 법문사, 1998.
- 이상봉, "지방정부회계의 환경적 특성과 구조", 경영경제연구,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영경제연구소, 1999.
- 이우택, "사회의 투명성과 회계의 발전을 위한 연구:회계의 Accountability
기능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8권 제1호, 한국회계학회, 1999.
- 이운재, 현대정부 및 비영리회계, 박영사, 1997
- _____,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의 개성방향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9호, 한국회계학회, 1989.11
- _____,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대학원, 1988
- 조태형, "복식부기 회계관리는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가?", 월간공인
회계사회(1월호), 1999.
- 정충영 · 최이규,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무역경영사, 1999.
- 제주도, 예산편성지침, 1999.
- 제주도, 회계실무, 제주도, 1999.
- 편호범, 정부회계론, 법경출판사, 1992
- AAA, Committee to Prepare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a Statement of Basic Accounting Theory",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1966.
- A. Boyett & G. Grioux, "the Relevance of Municipal Finance Reporting
to Municipal Security Decision", Government Finance, 1978.
- AICPA, "ATB No.1: Committee on Terminology, Review and Resume",
AICPA, 1941.
- Coopers & Lybrand, "Financial Disclosure Practices of American Citoes
- a Public Report", Michigan Univ., 1976.
- Crain Gilbert Warren, "an Investigation of the Usage & Comprehension
of Municipal Accounting Reports in Two Montana Cities",
ph. D. Dissertation, Illinois Univ.,1978

- C.W. Garner, *Accounting Budgeting in Public and Nonprofit Organizations*, Jossey-Bass, 1991.
- Daniels Janet DeLuca, "An Investigation of Municipal Financial Report Format, User Preference, and Decision Making", D.B.A. Dissertation, Boston Univ., 1988
- Ernst & Whinney, "How cities can improve their financial reporting", Ernst & Whinney, 1979.
- F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Original Pronouncements as of June 1, 1982", Stamford, Connecticut : FASB, 1982.
- GASB, "Statement No.1: Authoritative status of NCGA Pronouncements and AICPA Industry Audit Guide", GASB, 1984.
- _____, "Concepts Statement No. 1 : Objectives of Financial Reporting", Stamford, Connecticut : GASB, 1987.
- GFOA, "Governmental Accounting, Auditing and Financial Reporting", GFOA, 1994
- Herzlinger and Nitterhouse, *Financial Accounting and Managerial Control for Nonprofit Organization*, South-Western Publishing Co. 1994.
- Howard, Thomas Patrick, "On the Usefulness Alternative Reporting Formats for Municipalities", D.B.A. Dissertation, Arizona Univ., 1978
- James Michael Patton, "Usefulness of Municipal Financial Reports", ph.D. Dissertation, Washington Univ., 1975
- J.H. Engstrom, L.E. Hay, *Essential of Accounting for Governmental and Non-for-Profit Organizations*, Irwin/McGraw-Hill, 1999.
- K. Roman,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the Desirability of Applying Commercial Accounting Principles to Municipal Reporting", Indiana Univ., 1979.

- M. Gaffney, "Consolidated Versus Fund-by Fund County Reports : the Prospectives of Constitutes", Maryland Univ., 1984.
- R. Anthony, "Financial Accounting in Nonbusiness Organizations", FASB, 1978.
- _____, "Making Sense of Nonbusiness Accounting", Harvard Business review, 1980.
- R. Copeland & R. Ingram, *Municipal Financial Reporting and Disclosure Quality*, Addition-Wesley Publishing Co., 1983.
- _____, "Municipal Reporting Efficiencies : Causes and Solutions", Government Finance, 1979.
- R. Herzlinger & H. Sherman, "Advantage of Fund Accounting in Nonprofits", Harvard Business Review, 1980.
- R. Maschmeyer & R. Van Daniker, "Financial Information Needs of State and Local Officials", Government Finance, 1979.
- S. Davison, D. Green, W. Hellerstein, A. Madansky and R. Well, "Financial Reporting by State and Local Government Units", Chicago Univ., 1977.

<부록 A>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현재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 유용성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가 주민과 이해관계자 집단의 '알 권리'와 함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보고 모형을 탐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설문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설문에 대한 응답 내용은 순수한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에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응답자 개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의견을 피력해 주신다면 연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 설문에 참여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시는 일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9년 9월 1일

제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지도교수 : 고 부 언

연구자 : 강 만 순

(우) 690-061 제주시 화북 1동 4675

오현고등학교

전화 : 755-4212, 721-4217

H P : 019-691-8922

<설문 내용>

* 제1절 : 본 절은 인구통계학적인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1. 당신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당신의 연령은?

① 30세 미만 ② 30 - 39세 ③ 40 - 49세 ④ 50세 이상

3. 현재 당신이 종사하고 있는 기관(단체)은?

① 지방의회 의원

② 금융기관

③ 언론기관

④ 대학 및 연구기관

⑤ 기타

⑥ 공무원

4. 현 소속에 종사한 기간은?

① 1년 미만 ② 1-3년미만 ③ 3-5년 미만 ④ 5-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5. 당신의 소득 수준은?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6. 당신의 학력은?

① 고졸 ② 대졸 ③ 기타 ()

7. 당신은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예·결산보고서)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② 알고 있다.
 - ③ 조금 알고 있다.
 - ④ 전혀 모른다.
8. 당신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예·결산보고서)가 일반 시민에게 유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유용하다.
 - ② 유용하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유용하지 못하다.
 - ⑤ 아주 유용하지 못하다.
9. 당신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예·결산보고서)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항상 이용한다.
 - ② 자주 이용한다.
 - ③ 가끔 이용한다.
 - ④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
 - ⑤ 있는지조차 모른다.
10. 당신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예·결산보고서)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 재무정보원은 무엇입니까?

13.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같은 많은 법률적·회계상의 규칙이나 요구에 맞게 운영되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가 법률적·회계상의 규칙이나 요구를 잘 따르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충분하다.

전혀 충분하지 못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14. 지방자치단체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가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능력인 재정상태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충분하다.

전혀 충분하지 못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15. 지방자치단체는 현재의 업무활동 및 설비와 자본 시설 등의 취득을 위하여 자금을 지출합니다. 당신은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충분하다.

전혀 충분하지 못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16.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적은 비용으로 가능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당신은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재무보고서)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서비스원가)를 충분히 제공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충분하다.

전혀 충분하지 못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17. 위에 언급한 「13~16번」 문항의 4가지 정보 유형 중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순서대로 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적·회계상의 규칙이나 요구에 부응하는 지에 관한 정보

— 재무능력에 관한 정보

— 운영성과에 관한 정보

— 서비스원가에 관한 정보

* 제2절 : 첨부된 재무보고서를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첨부한 이 보고서는 명확하고 이해 가능합니까?

아주 명확하다. 전혀 명확하지 못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19. 첨부한 이 재무보고서는 법률적·회계상의 규칙을 따르는 지를 당신이 판단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적절하다.

전혀 적절하지 못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20. 첨부한 이 재무보고서는 재무능력을 판단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적절하다.

전혀 적절하지 못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21. 첨부한 이 재무보고서는 운영성과를 판단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적절하다.

전혀 적절하지 못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22. 첨부한 이 재무보고서는 활동 관련 지출(서비스원가)을 판단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적절하다.

전혀 적절하지 못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23. 첨부한 이 보고서에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재정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재계산이나 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필요하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24. 첨부한 이 보고서에 제시된 정보는 재정상태를 평가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충분하다.

전혀 충분하지 않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25. 일반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하면 미래에 세금부담이 적게 되고, 그만큼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도시를 선택한다면, 이 보고서에 나타난 도시에서 생활하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6. (금융기관 종사자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하면 미래에 부채 상환능력이 높아집니다. 만일 이 보고서의 도시가 자금 요청을 한다면, 재정 상태만을 고려하

여 이 도시에 대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7.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와 관련하여 귀하의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으로 설문을 마칩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세입결산총괄
(1998년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 현액 ㉠	징수 결정액 ㉡	수 납 액			미수 납액 ㉢-㉣	미수납액 처리		
				수납 총액 ㉤	과 오 납반 환액 ㉥	실제수 납액(㉦- ㉧)		미수 납액 ㉢-㉣	결손 처분	다음 연도 이월
합 계	170,439	193,683	194,985	193,193	262	192,931	2,054	387	1,667	
일 반 회 계	계	146,850	166,284	168,266	166,640	262	166,378	1,888	387	1,501
	지 방 세	14,675	14,675	16,074	15,121	69	15,052	1,022	302	720
	보 통 세	13,960	13,960	14,900	14,306	38	14,268	632	184	448
	목 적 세	583	583	586	569	1	568	18	1	17
	과 년 도 수 입	132	132	588	246	30	216	372	117	255
	세 외 수 입	20,671	40,105	41,277	40,604	193	40,411	866	85	781
	경 상 적 수 입	12,311	12,311	12,360	12,349	2	12,347	13	0	13
	임 시 적 수 입	8,360	27,794	28,917	28,255	191	28,064	853	85	768
	지 방 교 부 세	35,012	35,012	35,412	35,412	0	35,412	0	0	0
	지 방 양 여 금	15,336	15,336	14,408	14,408	0	14,408	0	0	0
	보 조 금	46,868	46,868	46,807	46,807	0	46,807	0	0	0
	국 고 보 조	34,528	34,528	34,528	34,528	0	34,528	0	0	0
	도 비 보 조	12,340	12,340	12,279	12,279	0	12,279	0	0	0
	지 방 채	14,288	14,288	14,288	14,288	0	14,288	0	0	0

	특 별 회 계	23,589	27,399	26,719	26,553	0	26,553	166	0	166
공 기 업	수도사업특별회계	10,310	11,704	11,474	11,449	0	11,449	25	0	25
	소 계	13,279	15,695	15,245	15,104	0	15,104	141	0	141
기 타	주택사업특별회계	299	299	347	343	0	343	4	0	4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141	2,141	2,142	2,142	0	2,142	0	0	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290	2,290	1,641	1,586	0	1,586	55	0	55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7,426	9,842	10,062	10,062	0	10,062	0	0	0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071	1,071	995	913	0	913	82	0	82
	발전소주변 지원 사업특별회계	52	52	58	58	0	58	0	0	0

세출결산총괄
(1998년도)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액 ②	예산성 립 후 증 감액①	예산현액 단(②+①)	지출원인 행위액④	지출액 ⑤	다음년도 이월액⑥	불용액 (⑤-⑥-⑦)	
합 계	170,438	23,243	193,681	166,555	164,674	19,160	9,847	
일반회계	계	146,849	19,434	166,283	145,985	144,131	15,655	6,497
	일반행정비	26,699	1,514	28,183	26,228	25,914	602	1,667
	사회개발비	31,435	9,707	41,142	36,446	35,675	4,631	836
	경제개발비	80,122	8,810	88,932	76,597	75,828	10,372	2,732
	민방위비	493	-7	486	379	379	50	57
	지원 및 기타 경비	8,130	-590	7,540	6,335	6,335	0	1,205
특별회계	23,589	3,809	27,398	20,570	20,543	3,505	3,350	
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10,310	1,393	11,703	10,423	10,396	733	574
기타	소 계	13,279	2,416	15,695	10,147	10,147	2,772	2,776
	주택사업특별회계	299	0	299	286	286	0	13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141	0	2,141	2,139	2,139	0	2
	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전기금특별회계	2,290	0	2,290	920	920	0	1,370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7,426	2,416	9,842	5,889	5,889	2,772	1,181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071	0	1,071	863	863	0	208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52	0	52	50	50	0	2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처리상황
(1998년도)

(단위:백만원)

회계별	세입결 산액(천)	세출결 산액(천)	잉여금(천) (과-하)	잉여금내역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192,931	164,674	28,257	16,291	1,881	0	1,156	8,929	
일반회계	166,378	144,131	22,247	12,812	1,854	0	1,154	6,427	
특별회계	26,553	20,543	6,010	3,479	27	0	2	2,502	
공 기 업	수도사업특별회계	11,449	10,396	1,053	707	27	0	0	319
기 타	소 계	15,104	10,147	4,957	2,772	0	0	2	2,183
	주택사업특별회계	343	286	57	0	0	0	0	57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142	2,139	3	0	0	0	2	1
	주민소득지원및생활 안정기금특별회계	1,586	920	666	0	0	0	0	666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0,062	5,889	4,173	2,772	0	0	0	1,401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913	863	50	0	0	0	0	50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58	50	8	0	0	0	0	8

대 차 대 조 표

단위 : 백만원

과 목	1997년도		1998년도	
	금 액		금 액	
* 자 산				
I. 유동자산		23,276		28,843
1. 현금·예금		22,222 ⁽¹⁾	27,203	
2. 미수금		1,054 ⁽²⁾	1,640	
1) 지방세	568		719	
2) 세외수입	412		780	
3) 기타	74		141	
II. 투자와 기타자산		8,305		8,864
1. 투자자산				
1) 유가증권		450 ⁽³⁾	450	
2. 기타자산				
1) 장기유자금		6,954 ⁽⁴⁾	6,512	
2) 적립기금		901 ⁽⁵⁾	1,902	
III. 고정자산		213,311		234,102
1. 토지		185,183 ⁽⁶⁾	201,083	
2. 건물		23,505	28,891	
3. 선박		1,228	1,465	
4. 비품		3,395 ⁽⁷⁾	2,663	
자 산 총 계		244,892		271,809
* 부 채				
I. 유동부채		16,391		27,161
1. 반환금		555 ⁽⁸⁾	1,156	
2. 미지급금		3,311 ⁽⁹⁾	1,855	
3. 미지급이자		12,525 ⁽¹⁰⁾	24,150	
II. 고정부채		38,774		55,026
1. 지방채		1,789 ⁽¹¹⁾	1,300	
2. 장기차입금		36,985	53,726	
부 채 총 계		55,165		82,187
* 순자산		189,727		189,622
부채와 순자산총계		244,892		271,809

운영수지보고서

과 목	1997년도		1998년도	
	금 액		금 액	
I. 운영수입		186,877		181,480
1. 지방세	13,250	13,250	15,052	15,052
2. 경상적이용자수입		11,535		12,710
1) 재산임대수입	384		395	
2) 사용료수입	2,067		1,482	
3) 사업장생산수입	461		256	
4) 수수료수입	838		1,051	
5) 징수교부금수입	5,804		7,938	
6) 기타사업수입	1,981		1,588	
3. 이전적수입		108,662		98,747
1) 지방교부세	33,928		35,412	
2) 지방양여금	14,747		14,408	
3) 보조금	59,987		48,927	
4. 차입수입		16,975		14,278
1) 정부자금채	1,500		10,000	
2) 금융기관채	4,000		3,000	
3) 지역개발기금융자금	1,000		1,287	
4) 기타차입금수입	10,475			
5. 기타수입		1,910		1,212
1) 과년도수입	480		192	
2) 잡수입	1,430		1,020	
6. 특별수입		34,545		39,472
1) 재산매각수입	5,253		5,601	
2) 융자금원금수입	317		313	
3) 전입금	3,020		7,303	
4) 기부금 및 기금수입	294		419	
5) 전년도이월금	25,661		25,836	
II. 운영비용		164,655		154,276
1. 인건비	15,349	15,349	15,464	15,464
2. 경상관리비		14,620		15,289
1) 기관 및 부서운영비	747		399	
2) 일반운영비	7,182		8,046	
3) 여비·교통비	923		869	
4) 업무추진비	1,659		1,593	
5) 회의비	132		109	
6) 복리후생비	3,921		3,792	
7) 연구개발비	56		181	

과 목	1997년도		1998년도	
	금 액		금 액	
3. 이전경비		21,108		21,710
1)보상금 등	6,775		4,780	
2)연금부담금 등	1,176		1,161	
3)출연금	406		294	
4)대민지원비	8,219		10,041	
5)사회단체보조금	208		280	
6)타기관지원비	2,471		2,413	
7)차입금 이자	1,853		2,741	
4. 자본지출		105,967		85,419
1)시설비 등	78,813		68,079	
2)민간자본보조	26,306		15,607	
3)타기관자본보조	70		1,058	
4)자산취득비	778		675	
5. 용자 및 출자		840		1,755
1)용자 및 출자금	840		1,755	
6. 보전재원		1,046		1,683
1)차입금원금상환	1,046		1,683	
7. 내부거래		4,970		9,505
1)타회계전출	4,900		8,803	
2)적립금	70		702	
8. 예비비		665		3,451
1)반환금 등	665		3,451	
III. 이월금		22,222		27,204
1. 명시이월금 ⁽¹²⁾		15,791		15,583
2. 사고이월금 ⁽¹³⁾		2,993		1,854
3. 계속비이월금 ⁽¹⁴⁾		0		0
4. 보조금사용잔액		555		1,156
5. 순 잉여금		2,883		8,611

(1)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잉여금의 합계액

(2) 세입결산액의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미수납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순액으로 표시

(3) 공유재산 증감액 및 현재액 보고서의 종류별 현황에서

(4) 채권 현재액 보고서의 종류별 채권액

(5) 각 종 기금적립액의 현재액

(6) 토지, 건물, 선박은 공유재산 증감액 및 현재액 보고서의 종류별 현황에

- 서 인용하였으며, 당기의 감가상각액은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미계상
-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상의 물품의 합계액
 - (8)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 중 보조금의 사용잔액
 - (9) 세출 결산 총괄 중 지출원인액과 지출액의 차액
 - (10) 채무결산 보고서상의 종류별 채무현황 중 이자액
 - (11) 지방채와 장기차입금은 채무결산 보고서의 종류별 채무현황 중 원금액
 - (12) 명시이월금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회계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금액.
 - (13) 사고이월금 : 회계년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했을 때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하는 금액.
 - (14) 계속비이월금 :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금액 중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당해 계속비 사업 완성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금액.



<부록 B> 통계처리표

표 B-1.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의한 보고서 배분

구분		수정보고서		기존 보고서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성별	남자	108	83.1	90	76.9
	여자	22	16.9	27	23.1
연령	30세 미만	25	19.2	23	19.7
	30-39세	54	41.5	54	46.2
	40-49세	37	28.5	26	22.2
	50세 이상	14	10.8	14	12.0
근무기간	1년 미만	11	8.5	4	3.4
	1-3년	26	20.0	27	23.1
	3-5년	18	13.8	22	18.8
	5-10년	32	24.6	28	23.9
	10년 이상	43	33.1	36	30.8
소득수준	상	2	1.5	1	0.9
	중상	11	8.5	19	16.2
	중	64	49.2	59	50.4
	중하	37	28.5	30	25.6
	하	16	12.3	8	6.8
학력	고졸	32	24.6	22	18.8
	대졸	91	70.0	83	70.9
	기타	7	5.4	12	10.3

표 B-2. 재무보고서의 이용빈도

빈도수 행 백분율 열 백분율	재무보고서 이용도					전체
	항상이용	자주이용	가끔이용	전혀 이용 않음	있는지 모름	
시민집단	1	4	26	52	13	96
	1.0	4.2	27.1	54.2	13.5	100.0
	9.1	18.2	32.1	46.6	65.0	38.9
채권자/투자자	0	0	7	27	5	39
	0.0	0.0	17.9	69.2	12.8	100.0
	0.0	0.0	8.6	23.9	25.0	15.8
입법/행정기관	10	18	48	34	2	112
	8.9	16.1	42.9	30.4	1.8	100.0
	90.9	81.8	59.3	30.1	10.0	45.3
합 계	11	22	81	113	20	247
	4.5	8.9	32.8	45.7	8.1	100.0
chi-square	50.753		df	8	prob	0.000***

표 B-3. 재무보고서의 유용성(이용자별)

변수		빈도수	평균	F값	F 유의도
종속변수	독립변수				
유용성	언론기관	43	2.5116	4.138	.001**
	연구기관	16	2.5625		
	기 타	37	2.2432		
	채권자/투자자	39	3.9487		
	의회의원	31	2.6774		
	공무원	81	2.8765		
	합 계	247	2.5830		

표 B-4. 재무보고서의 유용성(집단별)

변수		빈도수	평균	F값	F 유의도
종속변수	독립변수				
유용성	시민집단	96	2.4167	8.3962	.000***
	채권자/투자자	39	2.3077		
	입법/행정기관	112	2.8214		
	합 계	247	2.5830		

표 B-5. 재무정보의 만족도

빈도수 행 백분율 열 백분율	재무정보의 만족도					전체
	아주만족	충분하다	보통이다	불충분	아주부족	
시민집단	0	2	39	47	8	96
	0.0	2.1	40.6	49.0	8.3	100.0
	0.0	11.1	32.5	50.0	57.1	38.9
채권자/투자자	0	0	11	26	2	39
	0.0	0.0	28.2	66.7	5.1	100.0
	0.0	0.0	9.2	27.7	14.3	15.8
입법/행정기관	1	16	70	21	4	112
	0.9	14.3	62.5	18.8	3.6	100.0
	100.0	88.9	58.3	22.3	28.6	45.3
합 계	1	18	120	94	14	247
	0.4	7.3	48.6	38.1	5.7	100.0
chi-square	48.640		df	8	prob	0.000***

표 B-6. 재무보고서의 만족도(이용자별)

빈도수 행 백분율 열 백분율	재무보고서 만족도					전체
	매우유용	유용하다	그저 그렇다	유용 못함	아주 유용못함	
언론기관		2	15	22	4	43
		4.7	34.9	51.2	9.3	100.0
		11.1	12.5	23.4	28.6	17.4
연구기관			8	8		16
			50.0	50.0		100.0
			6.7	8.5		6.5
기 타			16	17		37
			43.2	45.9		100
			13.3	18.1		15.0
채권자/투자자	7	15	15	2		39
	17.9	38.5	38.5	5.1		100.0
	33.3	15.0	16.7	6.1		15.8
의회의원	1	3	20	7		31
	3.2	9.7	64.5	22.6		100.0
	100.0	16.7	16.7	7.4		12.6
공무원		13	50	14	4	81
		16.0	61.7	17.3	4.9	100.0
		72.2	41.7	14.9	28.6	32.8
합 계	1	180	120	94	14	247
	0.4	7.3	48.6	38.1	5.7	100.0
chi-square	60.735	df	20	prob	0.000***	

표 B-7. 이행관련 정보에 대한 인식도(이용자별)

변수		빈도수	평균	F값	F 유의도
종속변수	독립변수				
이행	언론기관	43	4.9535	8.992	.000***
	연구기관	16	5.4375		
	기 타	37	5.2973		
	채권자/투자자	39	4.8718		
	의회의원	31	4.0000		
	공무원	81	3.8765		
	합 계	247	4.5506		

표 B-8. 능력관련 정보에 대한 인식도(이용자별)

변수		빈도수	평균	F값	F 유의도
종속변수	독립변수				
능력	언론기관	43	5.0233	9.510	.000***
	연구기관	16	5.5625		
	기 타	37	5.5946		
	채권자/투자자	39	5.0769		
	의회의원	31	4.1613		
	공무원	81	4.0741		
	합 계	247	4.7328		

표 B-9. 성과관련 정보에 대한 인식도(이용자별)

변수		빈도수	평균	F값	F 유의도
종속변수	독립변수				
성과	언론기관	43	5.0698	9.432	.000***
	연구기관	16	5.5625		
	기 타	37	5.5946		
	채권자/투자자	39	5.0769		
	의회의원	31	4.1935		
	공무원	81	4.1235		
	합 계	247	4.7611		

표 B-10. 원가관련 정보에 대한 인식도(이용자별)

변수		빈도수	평균	F값	F 유의도
종속변수	독립변수				
원가	언론기관	43	5.3721	10.233	.000***
	연구기관	16	5.8125		
	기 타	37	5.7568		
	채권자/투자자	39	5.4359		
	의회의원	31	4.4516		
	공무원	81	4.3580		
	합 계	247	5.0202		

표 B-11. 이행관련 정보에 대한 인식도

빈도수 행 백분율 열 백분율	측정도							전 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시민집단	2	1	6	18	30	21	18	96
	2.1	1.0	6.3	18.8	31.3	21.9	18.8	100.0
	28.6	5.9	16.7	31.0	49.2	55.3	60.0	38.9
채권자/투자자		1	3	14	7	10	4	39
		2.6	7.7	35.9	17.9	25.6	10.3	100.0
		5.9	8.3	24.1	11.5	26.3	13.3	15.8
입법/행정기관	5	15	27	26	24	7	8	112
	4.5	13.4	24.1	23.2	21.4	6.3	7.1	100.0
	71.4	88.2	75.0	44.8	39.3	18.4	26.7	45.3
전 체	7	17	36	58	61	38	30	247
	2.8	6.9	14.6	23.5	24.7	15.4	12.1	100.0
chi-square 51.465 df 12 prob .000***								

표 B-12. 능력관련 정보에 대한 인식도

빈도수 행 백분율 열 백분율	측정도							전 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시민집단	1	4	4	16	21	28	22	96
	1.0	4.2	4.2	16.7	21.9	29.2	22.9	100.0
	33.3	21.1	11.4	39.0	31.8	53.8	71.0	38.9
채권자/투자자		1	3	7	12	13	3	39
		2.6	7.7	17.9	30.8	33.3	7.7	100.0
		5.3	8.6	17.1	18.2	25.0	9.7	15.8
입법/행정기관	2	14	28	18	33	11	6	112
	1.8	12.5	25.0	16.1	29.5	9.8	5.4	100.0
	66.7	73.7	80.0	43.9	50.0	21.2	19.4	45.3
전 체	3	19	35	41	66	52	31	247
	1.2	7.7	14.2	16.6	26.7	21.1	12.6	100.0
chi-square 51.790 df 12 prob .000***								

표 B-13. 운영성과 관련정보에 대한 인식도

빈도수 행 백분율 열 백분율	측정도							전 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시민집단	1 1.0 25.0		8 8.3 21.1	15 15.6 35.7	19 19.8 29.7	37 38.5 63.8	16 16.7 57.1	96 100.0 38.9
채권자/투자자		1 2.6 7.7	2 5.1 5.3	7 17.9 16.7	16 41.0 25.0	9 23.1 15.5	4 10.3 14.3	39 100.0 15.8
입법/행정기관	3 2.7 75.0	12 10.7 92.3	28 25.0 73.7	20 17.9 47.6	29 25.9 45.3	12 10.7 20.7	8 7.1 28.6	112 100.0 45.3
전 체	4 1.6	13 5.3	38 15.4	42 17.0	64 25.9	58 23.5	28 11.3	247 100.0
chi-square 52.256 df 12 prob .000***								

표 B-14. 서비스원가 관련정보에 대한 인식도

빈도수 행 백분율 열 백분율	측정도							전 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시민집단	1 1.0 50.0		4 4.2 15.4	15 15.6 34.9	19 19.8 29.2	30 31.3 50.8	27 28.1 65.9	96 100.0 38.9
채권자/투자자		1 2.6 9.1	1 2.6 3.8	4 10.3 9.3	14 35.9 21.5	12 30.8 20.3	7 17.9 17.1	39 100.0 15.8
입법/행정기관	1 0.9 50.0	10 8.9 90.9	21 18.8 80.8	24 21.4 55.8	32 28.6 49.2	17 15.2 28.8	7 6.3 17.1	112 100.0 45.3
전 체	2 0.8	11 4.5	26 10.5	43 17.4	65 26.3	59 23.9	41 16.6	247 100.0
chi-square 50.198 df 12 prob .000***								